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연구

2017. 12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

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요 약

1. 서 론

- 2014년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별공제항목(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사업자와 달리 필요경비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976년 보험료 소득공제, 1982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를 신설
 - 그러나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구간별 세제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특별세액공제율이 소득공제하의 유효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본 연구에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2.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35조 9,017억원 중 6.7%로 2번째로 조세지출규모가 크며, 개인기부금 세액공제는 7,031 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중 2.0%를 차지함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평균은 109,748원으로 대부분 한도인 12만원에 근접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함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의 평균은 178,647원으로,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급여수준별로 차이가 매우 큰 특징이 있음

3.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 사업자에 비해 필요경비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됨
 - 2014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보험료공제는 1976년 신설된 이후 공제대상 범위와 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거듭 개정된 후 2014년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기부금공제 또한 1982년 신설된 이후 공제대상 한도 증가방향으로 개정되다가 2014년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4.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 보험료공제제도에서 미국, 영국의 경우 납입단계의 세제상 혜택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건강저축계좌에 저축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영국의 경우 사회적 단체가 운영하는 보험에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진보험료공제제도가 있으며,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납부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기부금공제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및 프랑스는 기부금공제제도를 기부대상과 방법에 따라 다른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 타당성 평가

-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3년에는 31.1%까지 축소되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2014년에는 48.1%까지 치솟음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28.8%, 2015년 27.9%로 추정됨
-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을 분리해 별도의 공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공적 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사적 사회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현재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은 최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73만원의 57% 수준에 불과해 실제 지출액보다 낮은 편임
 - 그러나 현 상태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보장성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소득세 면세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으로 분리해 별도의 한도규정을 둘 경우, 고가승용차 보유자의 보험료공제혜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기부금 미공제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종교단체기부금 집중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증가해 최저소득 계층(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공제율은 10% 미만에 불과함
 -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기부유인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제대상기부금(한도 내 기부금)의 3분의 1 이상이 종교단체기부금에 집중되어 있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단체기부금 비중이 높음
- 보장성보험료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 면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별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특별세액공제율 인하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미 한 차례 세부담이 증가한 일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6. 효과성 평가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제방식 변경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1만원의 세부담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2015년 기준)
 - 총급여 1천만~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1인당 3.6만~4.8만원 감소한 반면,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부담이 1인당 2만~500만원 증가함
-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공제방식 변경 전 4.90%에서 공제방식 변경 후에는 4.63%로 낮아져(2015년 기준)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급여총계 하위 10~30% 사이 구간에서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일부 관찰됨
- 2015년 기준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은 0.82%, 개인기부금 비율은 62%로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의 정책목표 달성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
 -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정책적 목표는 개인기부금 비율 70%,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 2.0%를 달성하는 것임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공제방식 변경 후 조세 지원이 가구의 기부금지출 증가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공제방식 변경이 고소득 근로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수준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 공제방식 변경이 국가재정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2014년 1,102억원, 2015년 1,201억원,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2014년 2,202억원, 2015년 2,588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 3천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 구간에서 견어들이인 세수는 감소했으나,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과도한 세수증가가 발생함
- 전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7. 개선방향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초래한 문제점 중 하나가 소득세 면세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여 특별세액공제율 인하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세액공제율을 10%로 낮추면 소득세 면세자비율이 30%대로 축소되나,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1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특별세액공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종전과 같은 통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공제방식 변경 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기부금의 경우, 통합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고액기부 유인효과가 떨어지고, 납세자 형태에 따라 기부금 지출에 차등적 혜택이 부여되어 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조정과 관련하여 고소득층의 공제한도 축소와 고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 공제 축소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비조세수단 비중 확대와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한 연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 론	15
II.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19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21
2.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21
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21
나.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22
다.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23
라. 세액공제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24
마.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25
바. 성별, 연령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26
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27
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27
나.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28
다.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29
라.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30
마.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31
바. 성별, 연령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32
III.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35
1. 특별세액공제	37
가. 도입 목적	37
나. 정책대상자	37
다. 공제 내용	38
2. 보험료와 기부금의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40

가. 보험료	40
나. 기부금	40
IV.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43
1. 보험료 공제제도	45
가. 미국	45
나. 영국	46
다. 일본	46
2. 기부금 공제제도	47
가. 미국	47
나. 영국	51
다. 일본	56
라. 프랑스	59
V. 타당성 평가	61
1. 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63
가. 분석방법	63
나. 분석자료	65
다. 분석결과	68
2. 소득·세액공제의 타당성	71
가. 보험료 세액공제의 타당성 평가	72
나. 기부금 세액공제의 타당성 평가	73
3.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적정성	75
가. 공제대상의 적정성	75
나. 공제한도의 적정성	77
다. 공제율의 적정성	84
4. 소결	86

VI. 효과성 평가	89
1. 소득재분배	91
가.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친 효과 분석	91
나.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지니계수에 미친 효과 분석	103
2.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제고	106
3. 개인 기부 활성화	110
가. 개인기부금 지출 현황	110
나.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분석	113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119
5. 소결	123
VII. 개선방안	125
1. 특별세액공제율 인하	127
2.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 설정	131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조정	133
가. 고소득층의 공제한도 축소	133
나. 고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 공제 축소	135
4.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	136
가.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비조세수단의 비중 확대	136
나.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한 연장	138
참고문헌	140

표 목 차

<표 II-1> 특별소득·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조세지출 현황	21
<표 II-2> 2015년 성별, 연령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27
<표 II-3> 2015년 성별, 연령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33
<표 III-1> 보험료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41
<표 III-2>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42
<표 IV-1> 미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48
<표 IV-2> 기부자 혜택의 한도 규정	52
<표 IV-3> 영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55
<표 IV-4> 일본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57
<표 IV-5> 프랑스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60
<표 V-1> 2013년과 2015년 총급여 규모별 소득세 면세자 비율	63
<표 V-2>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비교	67
<표 V-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	69
<표 V-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비교	71
<표 V-5> 총급여규모별 보험료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2015년)	78
<표 V-6> 총급여 규모별 보장성보험료 지출액(2015년)	80
<표 V-7> 총급여규모별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2015년)	81
<표 V-8>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2015년)	83
<표 V-9>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유효세율 재계산	85
<표 VI-1>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비교	93
<표 VI-2> 소득공제하에서와 세액공제하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 사례	95

<표 VI-3>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과 세부담 증감	96
<표 VI-4>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	98
<표 VI-5> 기부금 공제방식 전환과 세부담 증감(2015)	100
<표 VI-6>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	102
<표 VI-7>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	105
<표 VI-8>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비교(2015)	106
<표 VI-9> 사업소득자의 세부담(2015년)	107
<표 VI-10> 근로소득자의 세부담(2015년)	109
<표 VI-11>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2006~2015)	111
<표 VI-12> 개인기부비율(2006~2015)	112
<표 VI-13>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전체 근로소득자 가구)	115
<표 VI-14> 기부금의 가격탄력성(홀별이 가구)	116
<표 VI-15> DID기법을 이용한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 분석	118
<표 VI-16>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4년)	120
<표 VI-17>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5년)	121
<표 VI-18>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4년)	122
<표 VI-19>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5년)	123
<표 VII-1> 특별세액공제율 인하에 따른 소득세 면세자 비율	129
<표 VII-2> 보험료 세액공제율 인하에 따른 급여구간별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	129
<표 VII-3> 보험료세액공제율 인하에 따른 1인당 세부담 증가	130
<표 VII-4>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2013년 적용)	131
<표 VII-5>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 초과인원 추정	133

그림 목 차

[그림 II-1] 2015년 근로소득자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현황	22
[그림 II-2]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23
[그림 II-3]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24
[그림 II-4] 2015년 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25
[그림 II-5]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26
[그림 II-6] 2015년 근로소득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현황	28
[그림 II-7]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29
[그림 II-8] 2015년 산출세액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30
[그림 II-9] 2015년 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31
[그림 II-10]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32
[그림 V-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	64
[그림 V-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2015년)	70
[그림 V-3] 총급여규모별 가구당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비교	73
[그림 V-4] 총급여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비교(2015)	74
[그림 V-5] 총급여규모별 기부금공제대상금액 비교(2015)	74
[그림 V-6] 기부금 공제대상금액1)의 구성(2015)	77
[그림 V-7]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2015)	82
[그림 V-8]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2015)	82
[그림 VI-1]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비교	94
[그림 VI-2]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과 세부담 증감(2015)	97
[그림 VI-3]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2015)	98
[그림 VI-4] 기부금 공제방식 전환과 세부담 증감(2015)	100
[그림 VI-5]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	102

[그림 VI-6]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	110
[그림 VI-7] 15세 이상 기부 참여율 추이(2006~2015)	110
[그림 VI-8]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112
[그림 VII-1] 소득공제 방식하에서의 유효세율과 특별세액공제율 비교	127
[그림 VII-2]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보장성보험료 지출액(2015)	134
[그림 VII-3] 총급여규모별 가구당 자동차보험료와 질병·상해·사망보험료(2015)	135
[그림 VII-4] 개인기부비율 및 GDP 대비 비중	136
[그림 VII-5]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미공제액 비중(2015)	137
[그림 VII-6]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2015)	139

I. 서론



I. 서론

- 2014년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별공제항목(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사업자와 달리 필요경비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976년 보험료 소득공제, 1982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를 신설
 - 그러나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구간별 세제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과세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보험료 납입액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납입액의 12%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기부금은 기부금액과 기부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부금액의 15%가 산출세액에서 공제
 - 미국, 영국의 경우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제공하는 세제상 혜택은 없으며, 일본은 지진피해액 보전 목적으로 손해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최대 5만엔까지 전액 공제함
 - 기부금의 경우 미국은 일반적으로 조정총소득의 50%를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며, 영국은 기부 형태에 따라 공제금액과 공제율이 상이하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며, 일본은 기부자 소득의 40%를 한도로 기부금액에 2천엔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 프랑스는 과거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던 방식에서 2003년 세액공제 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

-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특별공제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특별세액공제율이 소득공제하의 유효세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소득공제하에서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유효세율은 약 11%이나, 특별세액공제율은 이보다 높은 12%, 15% 수준에서 설정됨

- 이로 인해 2013년 32.4% 까지 하락한 면세자 비율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이후 2014년 48.1%, 2015년 46.8%로 증가
 - 4개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면세자 비율은 2014년 28.8%, 2015년 27.9%로 추정되었음
- 이처럼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 기반 축소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최근 임금상승 등의 원인으로 면세자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실제로 면세자 비율은 48.1%(2014년), 46.8%(2015년), 43.6%(2016년)로 매년 감소하였고, 연간 감소폭은 각각 1.3%p, 3.2%p 수준임
- 따라서 특별세액공제가 사업자와 근로자 간 공제 형평성 및 조세부담의 제고 등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면서 운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 보험료 및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부담에 미친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형평성 제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공제방식 변경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 급여(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의 차이가 공제방식 변경 후 오히려 확대되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의 수평성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 특히 특별세액공제율의 인하,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의 설정, 고소득층의 기부금 공제혜택 축소와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 확대, 저소득층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한도 확대 방안을 분석함

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Ⅱ.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현황

1.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35조 9,017억원 중 6.7%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이며, 개인기부금 세액공제는 7,031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 중 2.0%를 차지함

<표 II -1> 특별소득·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험료	21,269	20,268	18,259	19,087	21,569	24,139	24,112
기부금	7,818	7,958	8,758	8,774	9,448	9,865	7,031
계	29,087	28,226	27,017	27,861	31,017	34,004	31,143

주: 1.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

2. 보험료 조세지출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근로소득특별공제와 보장성보험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한 값임

출처: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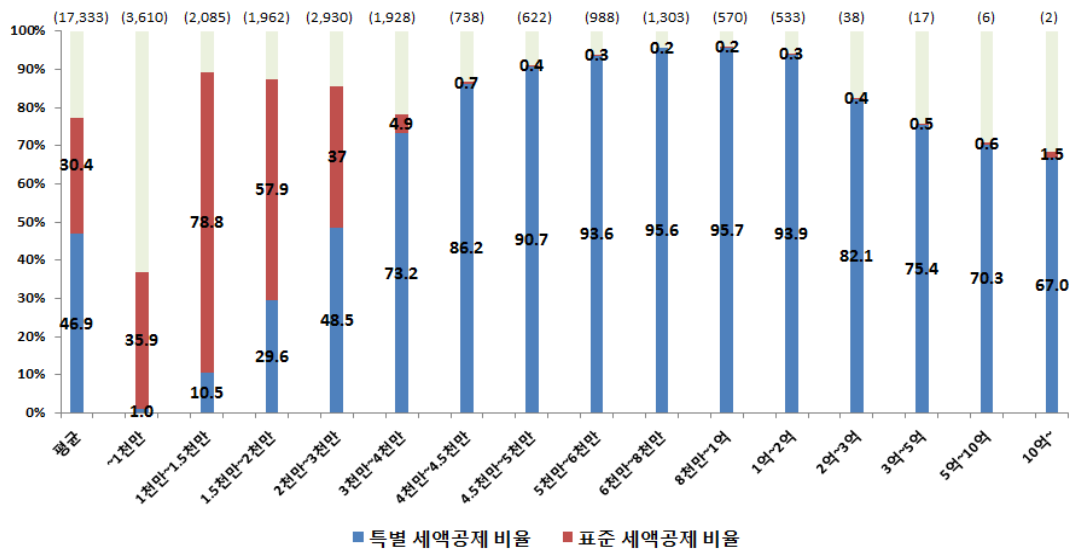
2.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6.9%로 총급여 1억원까지는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총급여 1억원 이상 구간부터 점차 감소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
 - 특히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이 1%에 불과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이 높음
- 총급여 4천만원~2억원 구간에서는 90%가 넘는 인원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함
- 총급여 4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표준세액공제 적용 비율이 1%가 안 됨

[그림 II -1] 2015년 근로소득자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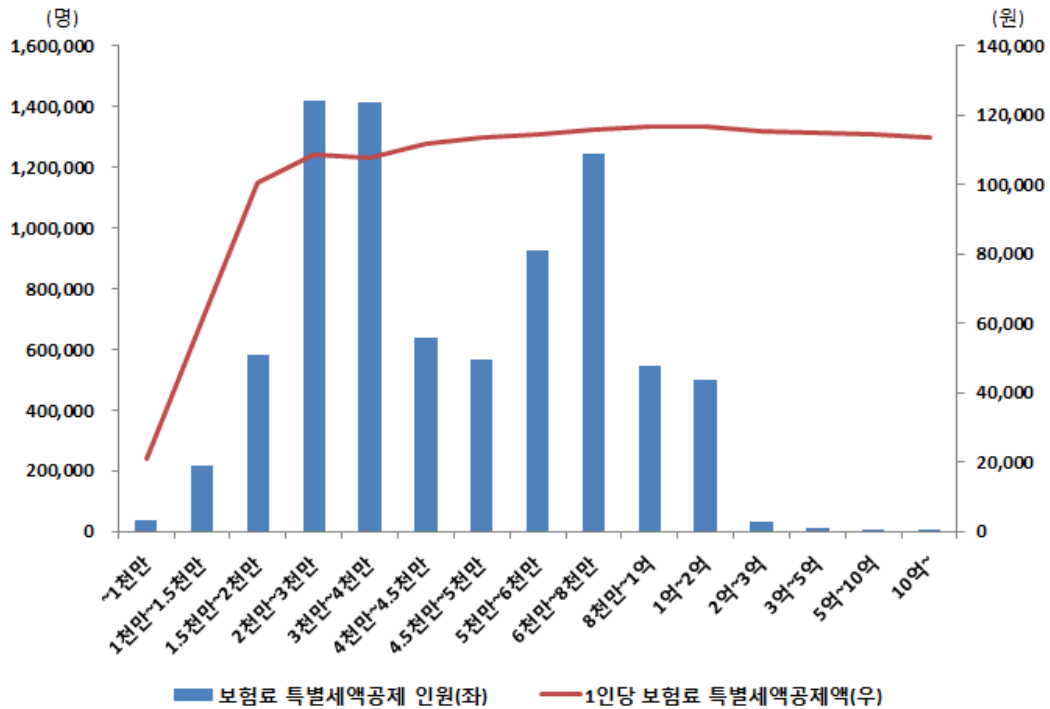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각 구간별 총근로자 수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나.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의 평균은 109,748원으로, 대부분 한도인 12만원(100만원 × 12%)에 근접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함
-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은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총급여 1.5천만원 이상 구간부터는 1인당 10만원 이상을 세액공제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는 1인당 21,182원을 공제하며 총급여 1천만~1.5천만원 구간에서는 1인당 61,496원을 공제함
 - 총급여 1.5천만~4천만원 구간에서는 1인당 10만원~11만원을 공제함
 - 총급여 4천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1인당 11만원~12만원을 공제함

[그림 II -2]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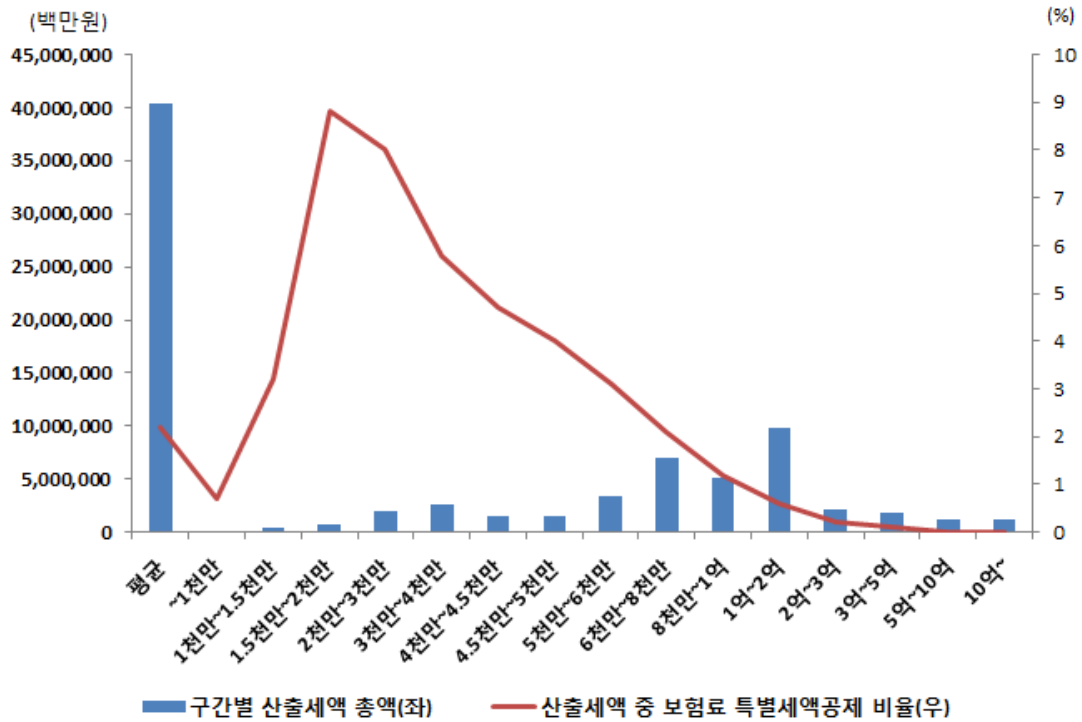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다.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산출세액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통해서 공제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2%이며, 급여수준 1.5천만~2천만원 구간에서 8.8%로 가장 높고 이후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최대 12만원(100만원 × 12%)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수준이 1.5천만~3천만원인 구간에서는 산출세액 중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지만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 급여수준 1억원 이상에서는 산출세액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고, 급여수준 5억원 이상부터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음

[그림 II -3]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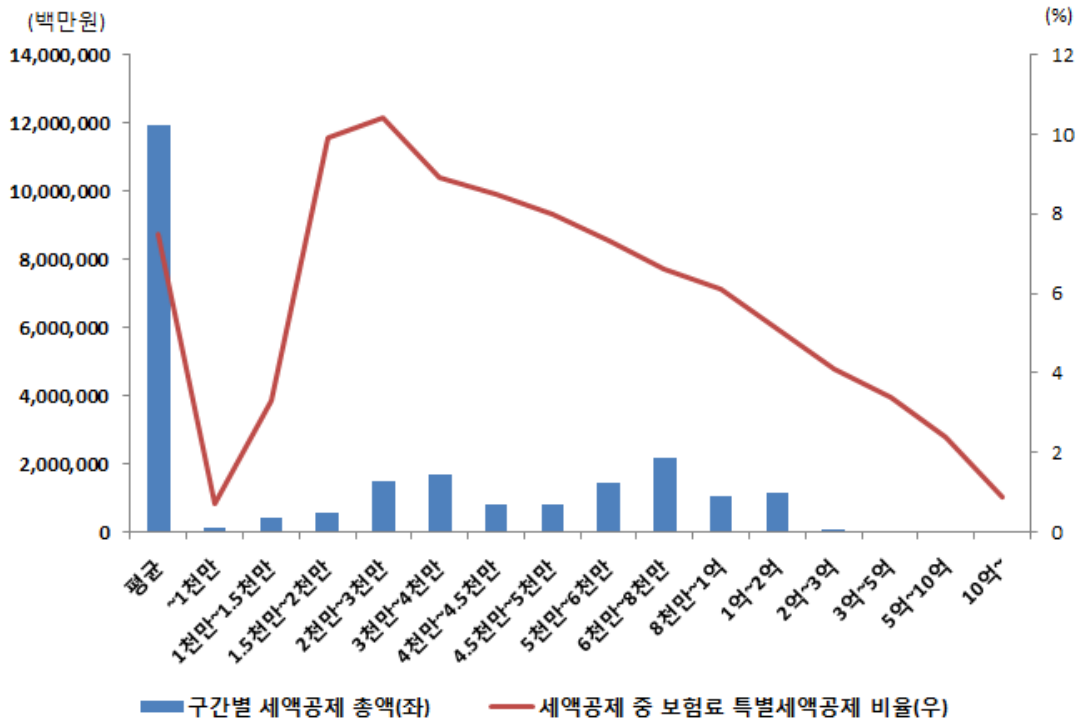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라. 세액공제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5%이며, 급여 수준 2천만~3천만원에서 10.4%로 가장 높고, 이후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는 최대 12만원(100만원 × 12%)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총 급여수준이 1.5천만~3천만원인 구간에서는 전체 세액공제 중 1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지만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그림 II -4] 2015년 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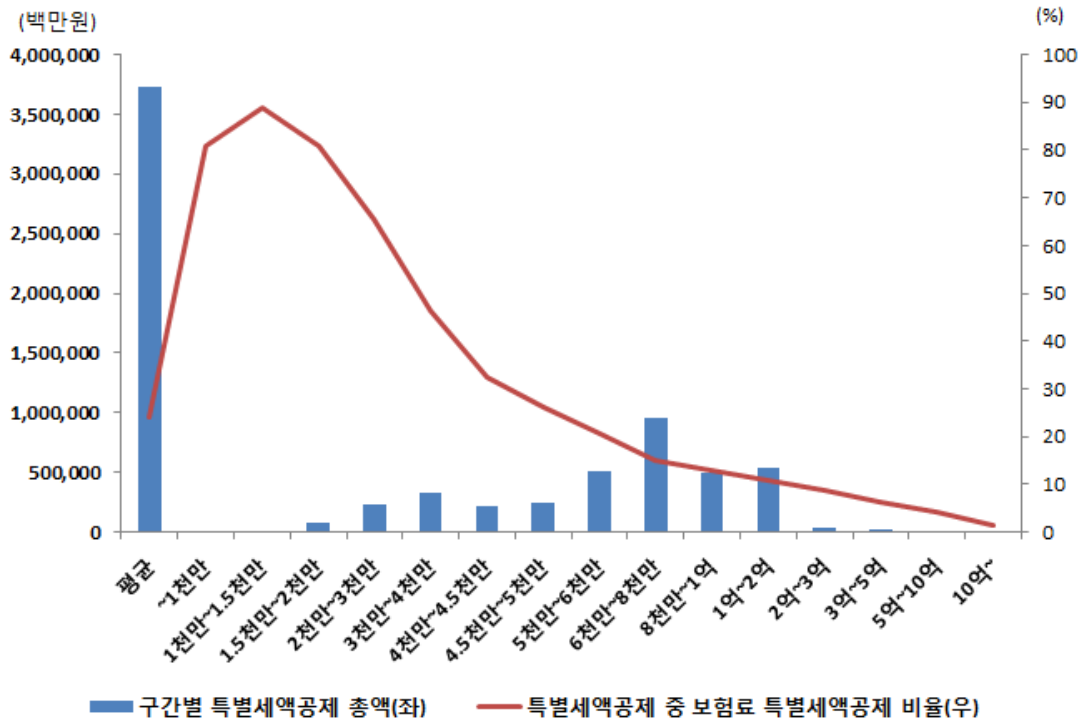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마. 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4.0%이지만 급여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 나서, 급여수준 2천만원까지는 80%가 넘지만 급여수준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급여수준 10억원 이상에서는 1.4%까지 하락함
 - 총급여수준 2천만원 이하에서는 보장성 보험 이외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지출이 거의 없음
 - 보험료는 12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본인과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에 대한 교육비, 법정기부금 등은 한도가 없으므로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큰 규모의 지출이 큰 규모의 세액공제로 이어짐

[그림 II -5]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바. 성별, 연령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도 높고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도 컸음
 - 남성의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은 52.0%로 여성의 39.5%에 비해서 30%가량 높고,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도 남성은 11.2만원으로 10.5만원의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보험료 신청비율도 낮고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도 상대적으로 적었음
 - 남성과 여성 모두 30세 이하는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청 비율은 낮아져 70세 이상의 보험료 신청 비율은 남성이 10.3%, 여성이 2.1%에 불과함

- 하지만,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함

<표 II -2> 2015년 성별, 연령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단위: %, 원)

성별, 연령별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1인당 보험료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비율
남성	52.0	112,018	20.9
~ 30세	26.0	101,077	51.1
30세 ~ 40세	59.5	111,977	31.8
40세 ~ 50세	63.3	114,160	17.6
50세 ~ 60세	60.3	113,962	14.4
60세 ~ 70세	33.3	109,715	25.7
70세 ~	10.3	99,578	12.7
여성	39.5	105,357	34.5
~ 30세	29.6	94,929	46.2
30세 ~ 40세	51.5	106,974	37.7
40세 ~ 50세	44.8	107,819	29.8
50세 ~ 60세	39.8	109,431	30.3
60세 ~ 70세	17.0	106,205	37.5
70세 ~	2.1	93,680	11.5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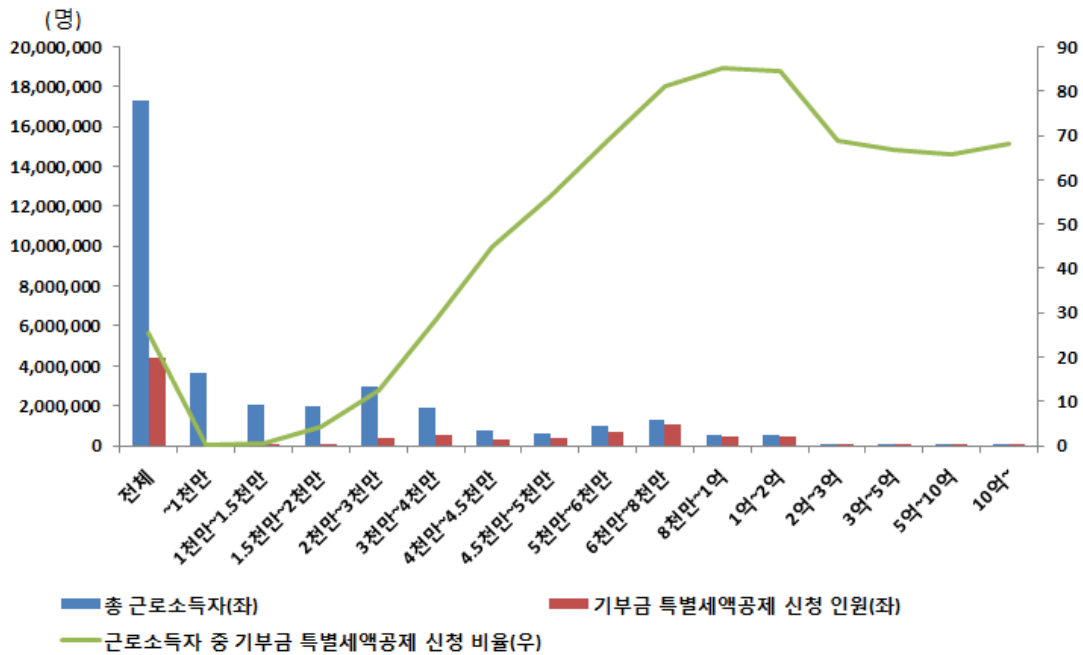
3.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인원은 441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분의 1인 25.5%가 신청하였고, 총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큼
 - 총급여 2천만원 이하에서는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이 5%가 안 됨
 - 특히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은 총급여 1천만원 이하에서 0.1%, 총급여 1천만~1.5천만원에서 0.4%에 불과함

- 총급여 6천만~2억원에서는 80% 넘게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총급여 2억원 이상에서는 60% 넘게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함

[그림 II -6] 2015년 근로소득자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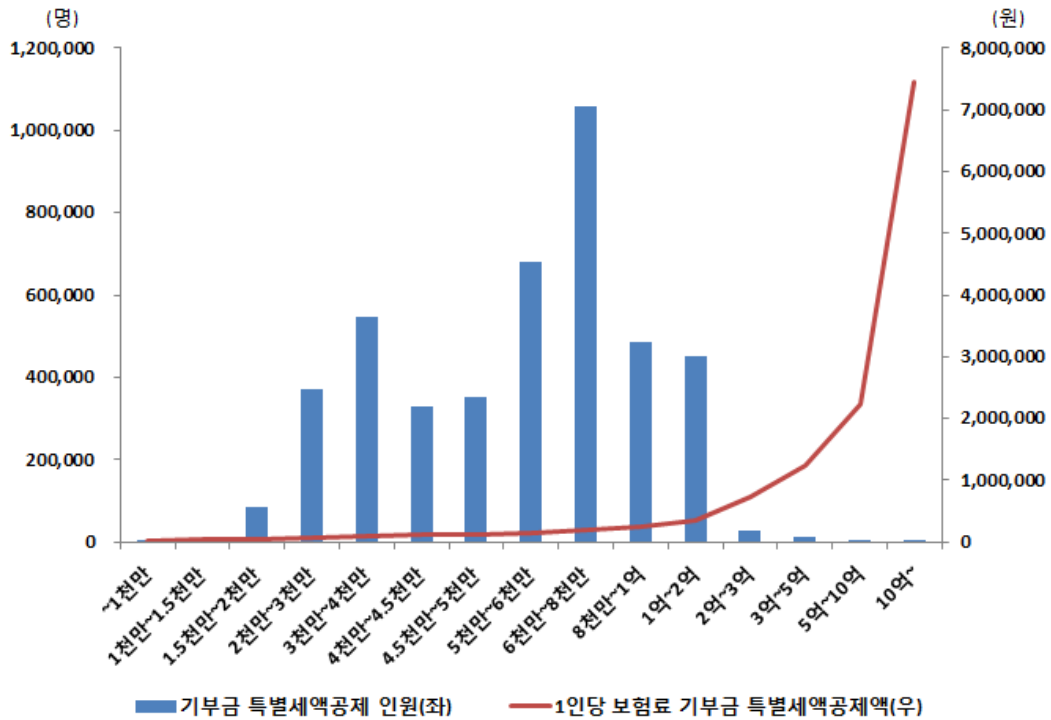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나.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의 평균은 178,647원으로,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며 급여수준별로 차이가 매우 큼
 - 총급여 10억원 이상의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7,452,255원으로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18,525원에 비해 400배가 넘음
 - 보험료는 누구에게나 1인당 100만원이 한도인 것과 달리 기부금은 종합소득 금액에 비례하는 방식이라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한도액이 커지기 때문임
 - 총급여 6천만원을 기점으로 총급여 6천만원 이하는 평균인 17.8만원보다 적게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 6천만원 이상은 평균인 17.8만원보다 더 많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그림 II -7]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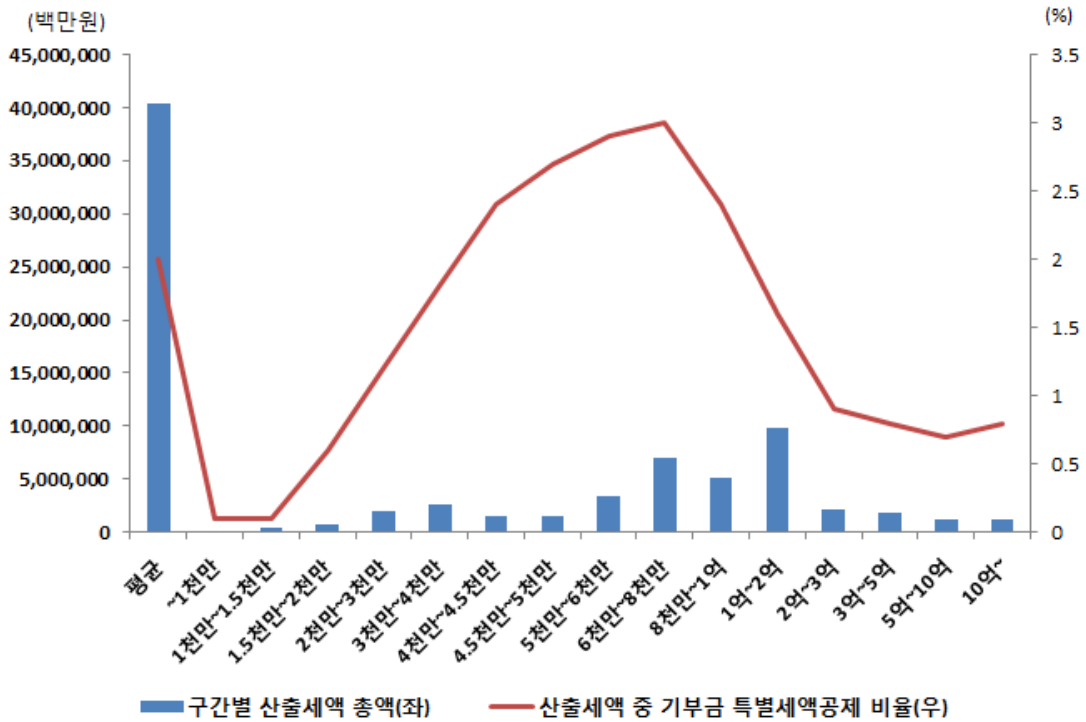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다. 산출세액에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산출세액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통해서 공제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2.0%이며, 총급여 6천만~8천만원에서 3.0%로 가장 높고 이후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했지만,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총급여수준이 높아 소득세율이 35%나 38%가 적용되면 기부금 세액공제율 (100%, 30%, 10%)에 비해 산출세액의 증가비율이 더 높아짐
 - 총급여 1.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산출세액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0.1%로, 총급여 1.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부금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음

[그림 II -8] 2015년 산출세액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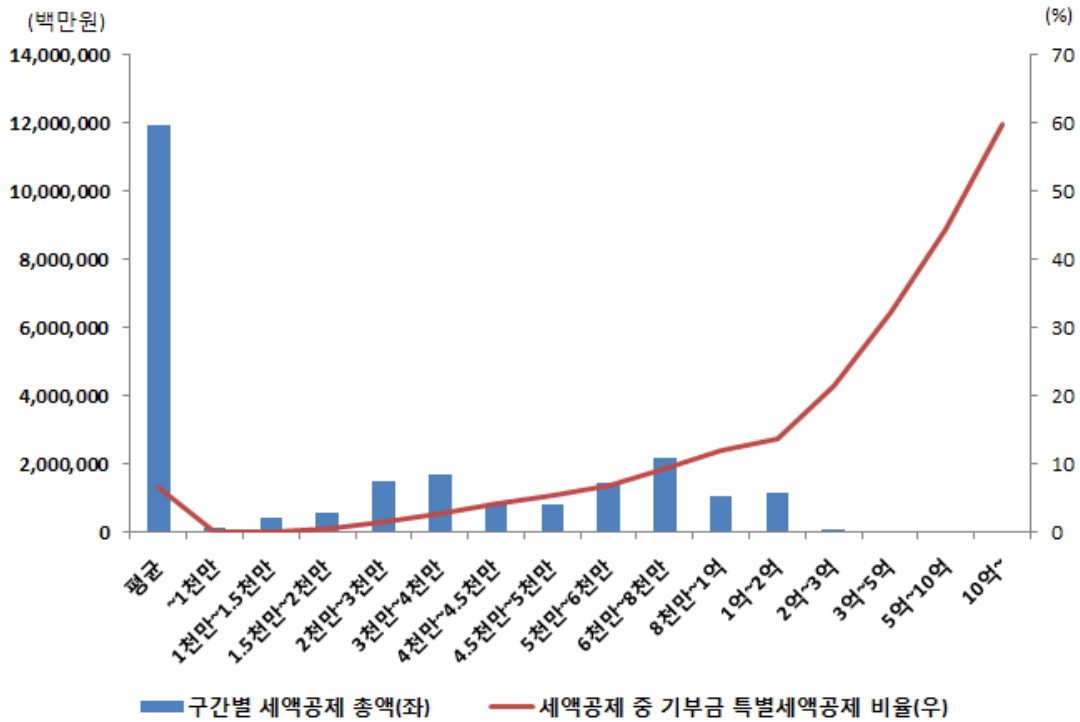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라. 세액공제에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6.6%이며, 급여 수준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급여수준별로 차이가 매우 큰 경향을 보임
 - 총급여 1.5천만원 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없으므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로 동일함
 - 급여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해서 총급여 10억원 이상의 가장 높은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이 59.8%로 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0.1%와 매우 크게 차이남

[그림 II -9] 2015년 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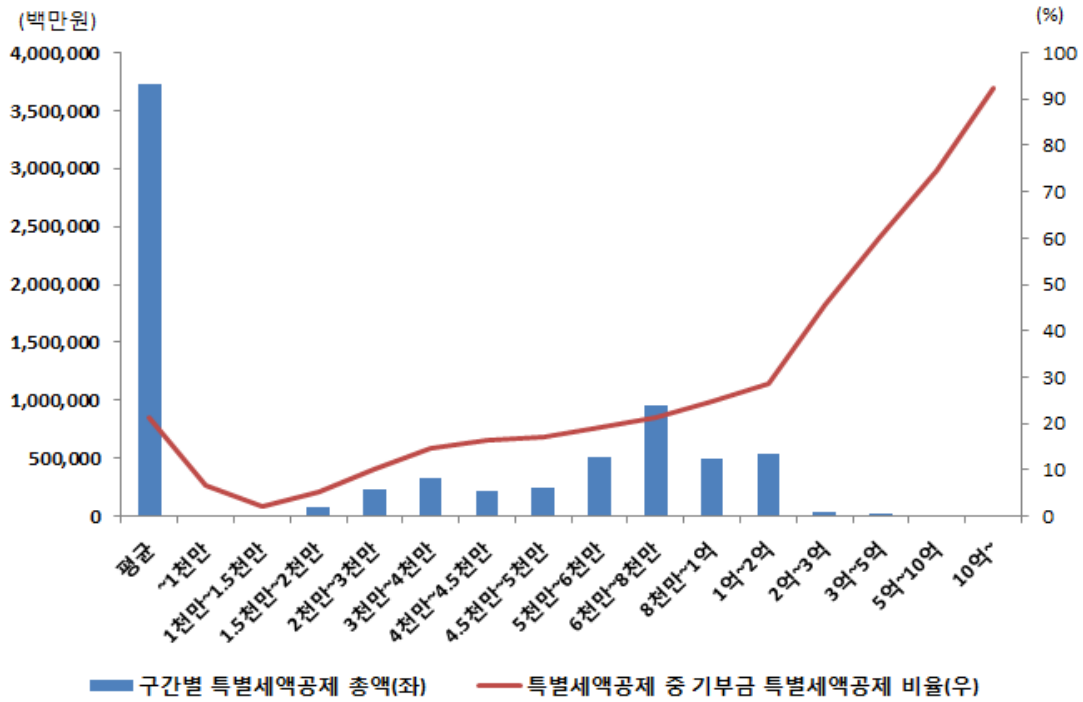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마.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율

-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21.2%이지만 급여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 나서, 급여수준 2천만원까지는 5%에 불과하지만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급여수준 10억원 이상에서는 92.3%에 달함
- 총급여수준 2천만원 이하에서는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특별세액공제가 8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5% 정도로 크게 차이남
- 보험료는 12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100%, 30%, 10%가 한도이므로 급여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큰 규모의 지출이 큰 규모의 세액공제로 이어짐

[그림 II -10] 2015년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바. 성별, 연령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비율도 높고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도 컸음
 - 남성의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은 30.1%로 여성의 18.7%에 비해서 60%가량 높고,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도 남성은 19.4만원으로 14.3만원의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기부금 신청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지만,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과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의 비율은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크게 상승함
 - 70세 이상의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은 남성 713,208원, 여성 656,151원으로 동일한 성별의 30세 이하에 비해 10배에 가까웠고,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 30%, 70대 50%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 -3> 2015년 성별, 연령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단위: %, 원)

성별, 연령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신청 비율	1인당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 중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비율
남성	30.1	193,926	20.9
~ 30세	12.3	76,508	18.2
30세 ~ 40세	29.9	128,124	18.3
40세 ~ 50세	39.5	199,082	19.2
50세 ~ 60세	40.7	262,288	22.3
60세 ~ 70세	17.3	317,180	38.5
70세 ~	5.9	713,208	52.5
여성	18.7	142,607	22.1
~ 30세	14.0	74,751	17.2
30세 ~ 40세	25.6	115,340	20.2
40세 ~ 50세	21.5	171,122	22.7
50세 ~ 60세	17.4	208,380	25.2
60세 ~ 70세	6.3	265,220	34.9
70세 ~	1.5	656,151	56.8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Ⅲ.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Ⅲ. 특별세액공제(보험료·기부금)

1. 특별세액공제

가. 도입 목적

- 사업자에 비해 필요경비가 없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소득공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됨
 - 1976년 12월 22일 「소득세법」 개정 시 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61조의2)를 신설함
 - 1982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 시 기부금특별공제(「소득세법」 제66조의3)를 신설함

- 2014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
 - 소득공제제도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과세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함

나. 정책대상자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2)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있는 자¹⁾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한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²⁾가 지급한 기부금

1)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함

다. 공제 내용

1)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가) 보장성보험료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에 대해 연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료 지급금액의 12%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³⁾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공제료 지급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⁴⁾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2)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2)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①, ②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에서 사업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2천만원을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에서 공제함

① 법정기부금⁵⁾

② 지정기부금⁶⁾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한도액 내의 금액

-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한도액 = 소득금액⁷⁾ × 10% +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 상기 ㉠ 외의 경우

• 한도액 = 소득금액 × 30%

-
- 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원, 국립대학교, 한국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5.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공공기관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6) 1.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기능대학,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 공익신탁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3.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4.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5.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
 6.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의 회비
 8.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에 신탁한 금액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7)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

2. 보험료와 기부금의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가. 보험료

- 1976년 보험료공제가 신설된 이후 보험료 공제대상 범위와 한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4년 보장성보험료는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 1976년에는 월급여 30만원 이하, 1978년에는 월급여 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보험료를 공제하였지만, 1991년 월급여 조건이 폐지됨
 - 1976년 12만원이던 한도는 현재 보장성보험료 각각 100만원까지 확대됨
 - 1976년 소득공제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
 - 2000년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대한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됨

나. 기부금

- 1982년 기부금공제가 신설된 이후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4년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됨
 - 1976년 신설 당시 지정기부금의 공제율은 5%였으나, 현재는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10%,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30%로 공제율이 증가함
 - 1982년 소득공제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나, 2014년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
 - 2014년 특별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고액의 기부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지만, 2014년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였고, 2016년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30%로 개정함

〈표 III-1〉 보험료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제·개정일	주요 변경사항
1976.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공제’ 신설(「소득세법」 제6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월급여 30만원 이하)가 지급한 보험료를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 -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 보험료 공제의 한도를 12만원으로 함
1978. 12.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 범위 및 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월급여 50만원 이하)가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를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 -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생명공제 - 보험료 공제의 한도를 15만원으로 함
1979.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보험료 공제의 한도를 24만원으로 함
1991.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월급여 조건 폐지
1992. 12. 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보험료 공제의 한도를 50만원으로 함
1994.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로 이관(「소득세법」 제52조) • 대상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가 「의료·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는 연 50만원, 특별공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함
1995.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특별공제항목들의 총공제 제한 규정 삭제
1999. 0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보장성보험료의 한도를 연 70만원으로 함
200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추가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함
2002.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보장성보험료의 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함
2014. 01.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이관(「소득세법」 제59조의4①) • 수혜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의 100분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보험료별로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2015. 0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그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표 III-2>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변천 과정

제·개정일	주요 변경사항
198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특별공제’ 신설(「소득세법」 제66조의3) · 수혜 대상 및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법정기부금 지급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정기부금의 경우 5%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1990.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및 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의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 기부금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1994. 1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로 이관(「소득세법」 제52조) · 수혜 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금액의 5%(사립학교 기부금의 경우 10%)를 한도로 함 - 특별공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함
1995.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특별공제항목들의 총공제 제한 규정 삭제
2000.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 대상 및 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2003.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함
2007.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 대상 및 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5%) -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함(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5%)
2010.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함
2014. 01.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세액공제’로 이관(「소득세법」 제59조의4④) ·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의 15%(3천만원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015.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

IV.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IV. 주요국의 보험료·기부금 공제제도

1. 보험료 공제제도

가. 미국

- 납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과 같이 납입 단계의 세제상 혜택은 없음
 - 미국 소득세법상 개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를 사적인 비용(personal expense)으로 규정하고 있음(U.S. code Title 26 §262)
 - 사적 비용, 생활비, 가계지출경비 등(Personal, living, and family expenses)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입 보험료는 증여재산가액 계상 시 필요경비로 공제됨

- 수령 단계에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살펴보면, 생명보험으로 수령한 보험금 등은 과세대상으로 나와 있지만(U.S. code Title 26 §61(a)(9), 61(a)(10)), 손해보험계약의 경우는 과세대상이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이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만기,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에 저축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음
 - 본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개인은 최대 3,400달러, 가족은 최대 6,75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총소득의 사전공제에 해당함
 - 이후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에 과세하지 않음
 -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보험료 공제와 유사하지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을 해주는 것은 의료비 공제와 유사함

나. 영국

- 현재는 납입 단계에서 보험료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Life Insurance Premiums for contracts made prior to 14th March 1984」이라는 조세 지출항목이 있지만 과거에 체결된 생명보험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됨
 - 1984년 3월 14일 이전 체결된 생명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세제혜택(Life Assurance Premium Relief)을 적용하였음⁸⁾
 - 적격 보험료 납부액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었음
 - 소득공제된 보험료는 보험차익 계산시 공제대상 납부보험료에서 제외됨

- 그 밖에 생명보험공제로는 다음의 공제제도가 있음
 - Friendly society tax exempt policies(Corporation Tax Act, ICTA 1988 s460, 462&464)
 - 수혜내용: 사회적 단체가 회원들과 함께 운영한 생명보험 사업의 보험료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제공하는 사망보험: 납입보험료의 50%
 - 사회적 단체가 회원들과 함께 운영한 생명보험 사업의 보험료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사업조합이 가입한 연금, 생명보험, 장례 혜택이 있는 보험에 납입보험료의 50% 공제
 - 고용주가 미망인, 고아 등을 위해 가입한 납입보험료

다. 일본

- 지진보험료공제를 통해 손해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최대 5만엔까지 전액 공제를 함(「소득세법」 제77조)
 - 지진이나 분화에 의한 진파를 원인으로 화재, 손괴, 매몰, 유출되어 자산의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손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보험료나 부금(지진 등 손해부분)을 지불하는 경우에 허용함

8) David Smailes(2015), p. 979.

- 공제의 대상범위는 납세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소유한 가옥을 보험이나 공제의 목적으로 보험료 또는 부금을 납부하는 것까지 인정함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통해 수령한 보험금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그러나 보험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 자산의 손상으로 인해 수령한 보험금 등과 불법행위나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자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수령한 보험금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 만기 및 중도 해지로 인하여 수령하는 환급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소득세법」 제9조 16호)

2. 기부금 공제제도

가. 미국⁹⁾

-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IRC §170(U.S. code Title 26 §170)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자선단체의 분류 등이 나와 있음
 - §170(a)에는 기부금 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170(b)는 공제한도, §170(c)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자선단체, §170(d)는 기부금공제의 이월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소득공제금액 및 한도는 납세대상자의 소득, 기부를 받는 단체의 종류, 기부 형태(현물기부, 현금기부 등)에 따라 달라짐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표 IV-1> 미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소득공제 제한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C §170(c)에 속하는 단체이어야 함 •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되는 특정국가 자선단체 	Public Cha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30% Limit(예외)
		Private Foundation 중 operating Foundation ¹⁾	
		Non operating Foundation 중 특정요건 충족 시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외 경우를 제외한 모든 §170(c)의 단체 • 자선단체를 위한 신탁 • 기부받는 단체별로 소득공제 제한규정의 구분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20% Limit(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10%의 소득공제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주: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란, 다른 자선단체들에게 모금 등을 통하여 재정지원 등의 소극적 활동만이 아니라 직접 자선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을 의미(IRC §170(e)(1)(B)(i))
 자료: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수혜 내용)미국은 조정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최대 50%까지 소득 공제혜택을 부여함
 - 기부금은 공제한도는 일반적으로 조정총소득의 50%로 제한되지만 기부금의 유형과 기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유형에 따라 조정총소득의 20% 또는 30%로 제한됨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는 공제한도가 높음
 -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한도가 기부금의 30%이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는 5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함
 - 2016년 기준으로 개인의 총소득이 아래의 항목보다 큰 경우에 기부금 공제액과 기타 공제액의 합계가 제한될 수 있음
 - 부부가 각자 납세하는 경우, \$155,650 이상
 - 미혼인 경우, \$259,400 이상
 - 한부모 가정(head of household)인 경우, \$285,350 이상
 - 부부 공동 신고자, 사실혼 관계인 자(qualifying widow)인 경우, \$311,300 이상

- (소득공제 한도)기부금 공제의 한도는 기부금의 유형과 기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유형 등에 조정총소득의 50%, 30%, 20%로 나누어짐
 - 소득공제 한도가 자선단체의 분류에 따라 조정총소득의 50%, 30%로 구분되며,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조정총소득의 30%, 20%로 구분하여 적용함
 - 아래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조정총소득의 최대 50%를 소득공제함
 - 공공자선단체(Public Charity Organizations)
 - 교회, 교육, 의료, 정부관련 조직, 공익자선법인 지원법인 등이 해당함
 - 민간 운영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
 - Income Test를 충족시켜야 하고, Asset Test, Expenditure Test, Support Test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함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nduit Foundation¹⁰⁾
 - 재단이 아니지만 성격상 재단의 활동을 하는 기부금 전달 기관(Conduit Foundation)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 중 Common Fund Foundation¹¹⁾
 - 재단이 아니지만 성격상 재단의 활동을 하는 기부금 조성 기관(Common Fund Foundation)
 - 50%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기부금의 30%로 제한됨
 - 신탁과 같이 자선단체 사용을 위한(For the use of any organization) 기부의 경우도 30% 제한규정이 적용
 - 50% 제한규정 자선단체에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30% 한도 규정을 적용함
 - 기부자가 자산판매로 장기자본이익이 될 시장공정가액만큼을 감소시키면 30% 제한규정이 아닌 50% 제한규정만 적용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를 하는 경우에는 30% 제한규정을 미적용함
 - 자격요건을 갖춘 부동산 권리(Qualified Real Property Interest)를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Qualified Organization)에게 보존의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함¹²⁾

10) IRC §§170(b)(1)(A)(vii) and 170(b)(1)(E)(ii).

11) IRC §§170(b)(1)(A)(vii) and 170(b)(1)(E)(iii).

- 그러나 50% 제한규정 자선단체 이외에 자본이득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20% 한도를 적용함

□ (이월공제)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5년 동안 소득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함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는 15년 동안 이월 가능
- 이월공제 적용은 당해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이후에 적용

□ (정책대상자)¹³⁾ 종교, 자선, 학술, 문화, 예술, 교육, 아동 또는 동물 학대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소재 법인, 신탁, 공동모금, 펀드, 재단 등에 기부한 개인 또는 법인

- 미국 국세청 Code Section 501에 의거 비과세 대상 기관 목록을 수시로 발표
 -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재산소유권 보유 회사, 교회·자선단체·교육기관 등 유형별로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재무부의 「Tax Expenditures 2017」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세지출제도를 통해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자선 기부금 공제-교육(Deductibil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_education): 과세대상자(개인, 법인)가 교육·직업 훈련기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deduction)를 제공함
- 자선 기부금 공제_교육·건강 이외 분야(Deductibil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 other than education and health): 과세대상자(개인, 법인)가 자선단체, 종교단체 및 기타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deduction)를 제공함
 - 현물기부를 할 경우에는 기부한 자산의 현재가치를 공제하며,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개인의 총기부금은 조정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인의 총기부금은 세전 소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2007.

13) 유경문·이선성·박기백, 「기부금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0.

- “Deductibility of charitable contributions(health)”: 과세대상자(개인, 법인)가 비영리 보건·의료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deduction)를 제공함

나. 영국

- 영국의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을 보면 “Gift aid”제도, “Payroll Giving”제도와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제도가 있음
-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부대상은 자선단체,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으로 크게 분류됨
 - 자선단체의 정의는 자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직, 신탁을 의미함
 -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CC(Charity Commision, 잉글랜드, 웨이즈)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 스코틀랜드)을 두고 있음
 - 위의 기관에 등록된 자선단체들에 기부한 경우에만 기부금의 세제상 혜택이 인정됨
 - 2002년부터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커뮤니티에 등록된 스포츠 클럽의 경우, “Gift Aid”에 대해서는 자선단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도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음

1) Gift Aid(현금선물형 기부)

- (수혜내용)1990년에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Gift Aid”라는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영국 자선단체에 현금 등으로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을 기본세율(Basic Rate)로 세금을 감면해준 것처럼 처리하고 그 금액만큼 자선단체에 주어지는 제도임
 - 기부받은 자선단체가 기부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음
 - 고소득세(Higher Rate) 납세자는 소득공제할 때에 Higher Rate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고소득세(Higher Rate) 납세자가 기부한 Gift Aid에 대하여 자선단체는 기본 세율을 기준으로 청구(Reclaim) 가능

- (조세혜택의 제한)기부자의 Gift Aid를 통한 조세혜택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
 - 1,000파운드 이상을 한 해에 기부한 기부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특정 자선단체가 받은 기부혜택이 250파운드가 넘지 않아야함
 - 기부금액의 2.5%까지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자선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기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
 - Gift Aid가 유효한 조세혜택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
 - 기부자나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기부의 결과로 혜택을 받는지 여부
 - 혜택이란 물품이나 서비스를 자선단체나 제3자로부터 기부자나 기부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기부의 대가로 받은 경우를 의미함
 - 기부자가 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공지, 자선단체의 재산이나 야생서식지 등을 구경하는 입장권, 자선단체들의 재산을 구경하는 권리 등은 혜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부자의 배우자이거나, 친척, 배우자의 친척인 경우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그 혜택이 규정된 한도를 넘는지의 여부
 - 기부자 혜택의 한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부자가 이전에 동일 자선단체에 기부의 대가로 받은 혜택과 합한 가치가 25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표 IV-2〉 기부자 혜택의 한도 규정

기부금액	혜택의 가치
0~100파운드 이하	기부금액의 25%
100파운드 초과 ~ 1,000파운드 이하	25파운드
1,000파운드 초과	기부금액의 2.5%

- (정책대상자) Gift Aid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신고해야함
 - 영국 거주자가 기부한 경우

- 공무원(Crown Servants) 또는 영국 군대에 소속된 자가 기부한 경우
 - 그 밖의 비거주자가 영국에서 부과하는 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 기부금 총액 이상인 경우
- (기부방법) 기부는 실제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채권포기나 보증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것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우편환(postal order), 자동이체(standing order), 전신송금(telegraphic transfer), 외환 등으로도 기부 가능
 - 외환의 경우, 자선단체가 Gift Aid Payment를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기부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
 - 기부금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함¹⁴⁾
 -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함
 - 기부금이 환불대상이 아니어야 함
 - “Payroll deduction” 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야 함
 - 납부한 기부금이 다른 제도에 의해 소득공제가 된 것이 아니어야 함
 - 기부가 약정이나 조건부 지불형태를 가지면 안 됨
 - 기부금으로 인해 자선단체에서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Section 417 ~ 421)
 - 해외에 기부하는 것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 서비스나 권리, 기타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은 기부가 될 수 없고, 기부 세제혜택도 인정되지 않음. 다음의 경우들은 Gift Aid 범주에 속하지 않음
 - 특정인에 대한 학비 지불
 - 책이나 음식 등의 구입에 대한 비용, 바자회 등에서 구입비용
 - 행사 등에 대한 입장료
 - 복권이나 특정기금 모금용 복권(래플, Raffle)에 대한 구입비용
 - 래플(Raffle) 구입비용은 기부가 아니지만, 래플(Raffle) 행사의 입장권은 기부로 인정함
- ※ 래플(Raffle) 행사에서 상을 탈 가능성이 적고, 기대가 낮다는 것은 기부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상의 가치가 낮다는 것 등도 기부 여부와 무관함

14) 영국 소득세법 Section 416(Income Tax Act 2007, Section 416).

2) Payroll Giving¹⁵⁾

- “Payroll Giving”이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

- (수혜내용) 급여 또는 연금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을 차감하여 기부금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과세소득에서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함
 -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고용주는 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이 승인한 “Payroll Giving Agency(기부금 전달기관)”에 보내고, “Payroll Giving Agency(기부금 전달기관)”는 모아진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
 -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상환(repayment) 청구를 할 수 없음
 - (소득공제 한도)2000년 개정으로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

3)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의 기부는 2000년부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기부는 2002년부터 세금감면이 인정됨
 - (수혜내용)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Benefit)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실시
 - 조세감면은 기부자의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함
 -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매매 후 현금 기부하는 것보다 기부금액이 더 큼

4) 법인의 기부금 공제

- 법인의 경우에는 “Gift Aid”제도와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항목을 통해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15) 영국 소득세법 「Income Tax(Earnings and Pensions) Act 2003」, Section 713 ~ 715.

- 법인이 “Gift Aid”제도를 통해 기부할 경우에 개인과 달리 신고서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과세수익(Taxable Profit)에서 제외됨
 - 기부금 자체는 세금부과 없이 자선단체에 전달되고, 개인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를 통해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의 기부는 2000년부터,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기부는 2002년부터 세금감면이 인정되고 있음
 -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와 유사한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음

- Gifts to charities(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TCGA 1998 s257)
 - 수혜내용: 자산 처분이 자선단체에 기부로 이어질 경우 해당 처분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주하여 비과세

〈표 IV-3〉 영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감면 사항	비고
개인	1. CC(Charities Commission, 잉글랜드·웨일즈)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 스코틀랜드)에 등록된 Charities	Gift Aid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	2000년 기부금액 한도규정 삭제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2000년과 2002년 신설제도
		Payroll Giving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tax relief가 이루어짐	2000년 기부금액 제한규정 삭제
법인	2. ‘Charities’의 성립요건들은 명문규정이 없고 판례로 발전	Gift Aid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과세수익에서 제외	2000년 기부금액 한도규정 삭제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2000년과 2002년 신설제도

- Payments to relevant scientific research associations(Income Tax Act, ITTOIA 2005 s88; CTA 2009 s88)
 - 수혜내용: Scientific Research Associations는 영국 자선단체로 취급되며 Scientific Research Associations에 지불한 금액은 자선 기부금으로 취급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음
- Transfers to political parties on death(Inheritance Tax Act, IHTA 1984 s24)
 - 수혜내용: 주요 정당에 대한 기부의 경우 상속세 면제

다. 일본

- 「소득세법」 제78조 및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의3에 기부금 공제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일본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음
-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이 동일함
 - 기부금 공제액은 기부자의 소득의 40%를 한도로 하여 기부금액에 2천엔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의 기부금(「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1호), ② 지정기부금(재무대신의 지정에 의함, 「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2호),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의 기부금(「소득세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217조), ④ 정치단체 등에의 기부금을 말함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에 따르면, 독립행정법인(동조 1호), 개호노인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동조 1의2호),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일본사법지원센터, 일본사립학교진흥 및 공제사업단, 일본적십자사(동조 2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동조 3호), 학교법인(동조 4호), 사회복지법인(동조 5호), 갱생보호법인(동조 6호)등이 해당함

-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특정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
 - 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정당등에 대한 기부금합계액(총 소득금액의 40% 한도)에서 2천엔을 뺀 금액의 30% 중 100엔 미만은 절사한 금액을 정당등기부금특별공제액으로 함
- 일반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법인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 특정공익증진법인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과 별도로 일정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7조 제4항,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1의2)

<표 IV-4> 일본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구분	기부금 유형	수혜 내용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액(소득의 40% 한도) - 2천엔]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① [기부금액(소득의 40% 한도) - 2천엔] 소득공제 또는 ② [기부금액(소득의 40% 한도) - 2천엔] × 30% 세액공제 ①과 ② 중에 선택
	일반기부금	공제 없음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특정지역고용등촉직법인에 대한 기부금	①기부금합계액, ②[자본금 등의 금액 × 당기월수/12 × 0.25% + 소득금액 × 5%]에 해당하는 금액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일반기부금	[자본금 등의 금액 × 당기월수/12 × 0.25% + 소득금액 × 2.5%] × 50%

주: 개인기부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해 일반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실시

- 특정지역고용등촉진법인에 대한 기부금(구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12, 부칙 제65조)도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및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동일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
 - 기부금합계액과 [자본금 등의 금액 × 당기월수/12 × 0.25% + 소득금액 ×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함
 -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동일한 손금산입한도
 -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금액은 [자본금 등의 금액 × 당기월수/12 × 0.25% + 소득금액 × 2.5%]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정책대상자) 세법에 규정한 단체에 기부한 개인·법인은 기부한 단체에 따른 각각의 공제한도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부단체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개인은 법인과 달리 일반NPO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재무대신이 지정
 - 특정공익증진법인
 -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
 - 「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으로 시험연구, 병원사업의 경영,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 자동차안전운전센터, 총합연구개발기구,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일본적십자사 등 특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재)일본체육협회, (재)무역연수센터, (재)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추진기구,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방송프로그램센터, (재)장수사회개발센터, (재)일본올림픽위원회, 식품유통구조개선추진기구, (재) 대판만지역 개발추진기구, 정신장애자사회복지촉진센터, 학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본육영회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지정을 받은 것
 - 민법 법인으로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의 설치 또는 학교 및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또는 「사립학교법」 제64조 제4항에 의해 설립된 준학교법인에서 전수학교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사회복지법인
- 「更生보호사업법」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更生보호법인
- 인정NPO 법인
 - 일반NPO법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각 국세청장의 인정을 받은 NPO 법인을 ‘인정NPO법인’이라 부르며, 이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음
- 일반NPO법인

라. 프랑스

- 프랑스는 2003년 8월 1일 세법 개정(「조세일반법전」 제238조의2)으로 과거에 공익성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던 방식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음
- 개인이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s, associations of general interest),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s)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최대 75%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함(Code général des impôts 200)
 -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530유로까지는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0%까지 6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한 후 차기 5년간 이월하여 개인의 세액에서 공제함
 - 2003년 세법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와 과세소득 상한선을 높이고 있음
- 부유세(ISF)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현금 또는 프랑스와 외국의 정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유세(ISF)에서 공제할 수 있음(Code général des impôts 885-0 V bis A)
 - 프랑스 「조세일반법전」 제200조에 규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 세액공제 한도는 50,000유로까지이며, 이는 소득세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45,000유로임
- 법인(legal entities)은 공익협회(public utility associations, general interest associations), 공익재단(public utility foundation) 등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매출의 0.5%를 한도로 함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고한 후 5년간 차기로 이월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음

□ 프랑스 조세지출예산서(Dépenses Fiscales 2017)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와 유사한 조세지출은 다음과 같음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Réduction d'impôt au titre des dons)
 - 「일반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소득세, CGI 200」에 규정되어 있음
 - 정책목적: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
 - 정책대상자: 기부금을 받은 공익단체
 - 수혜내용: 과세대상 소득의 20%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수령한 기부금의 66% 세액공제

<표 IV-5> 프랑스의 기부금 공제제도 개요

구분	기부 유형	수혜내용
개인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6% 소득세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530유로까지: 기부액의 75% 소득세 세액공제 530유로 초과금액: 기부액의 66% 소득세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공익재단(public utility foundations)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75% 부유세(ISF) 세액공제 (50,000유로 한도) ¹⁾
법인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매출의 0.5% 한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

주: 중소기업체(PME)에 대한 투자로 세금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 세액공제 한도가 45,000유로로 축소됨

자료: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2009 참고

“<https://www.economie.gouv.fr>” 및 “<https://www.legifrance.gouv.fr>” 참고

V. 타당성 평가



V. 타당성 평가

1. 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증가

가. 분석방법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1.3%에서 2014년 48.1%로 급증하였고, 소득세 면세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비율도 2013년 8.8%에서 2014년 21.6%로 2배 넘게 증가함
-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 후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면제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함

<표 V-1> 2013년과 2015년 총급여 규모별 소득세 면세자 비율

(단위: 명, %, %p)

총급여 규모	2015년			2013년			증가 비율
	총인원	면제 인원	비율 (A)	총인원	면제 인원	비율 (B)	
~ 1천만	3,610,221	3,610,162	100.0	3,789,541	3,495,132	92.2	7.80
1천만 ~ 1.5천만	2,084,938	1,799,191	86.3	2,177,511	819,074	37.6	48.70
1.5천만 ~ 2천만	1,961,900	808,667	41.2	1,805,834	403,837	22.4	18.80
2천만 ~ 3천만	2,930,090	1,010,047	34.5	2,589,484	298,639	11.5	23.00
3천만 ~ 4천만	1,928,195	584,068	30.3	1,771,903	81,611	4.6	25.70
4천만 ~ 4.5천만	737,622	143,822	19.5	678,625	12,837	1.9	17.60
4.5천만 ~ 5천만	622,341	79,796	12.8	565,612	5,638	1.0	11.80
5천만 ~ 6천만	988,334	52,777	5.3	915,319	3,524	0.4	4.90
6천만 ~ 8천만	1,303,229	13,098	1.0	1,124,751	749	0.1	0.90
8천만 ~ 1억	570,400	1,125	0.2	468,973	65	0.0	0.20
1억 ~ 2억	533,347	1,477	0.3	421,313	53	0.0	0.30
2억 ~ 3억	37,649	0	0.0	30,825	0	0.0	0.00
3억 ~ 5억	17,112	0	0.0	13,262	0	0.0	0.00
5억 ~ 10억	6,112	0	0.0	5,141	0	0.0	0.00
10억 ~	1,904	0	0.0	1,676	0	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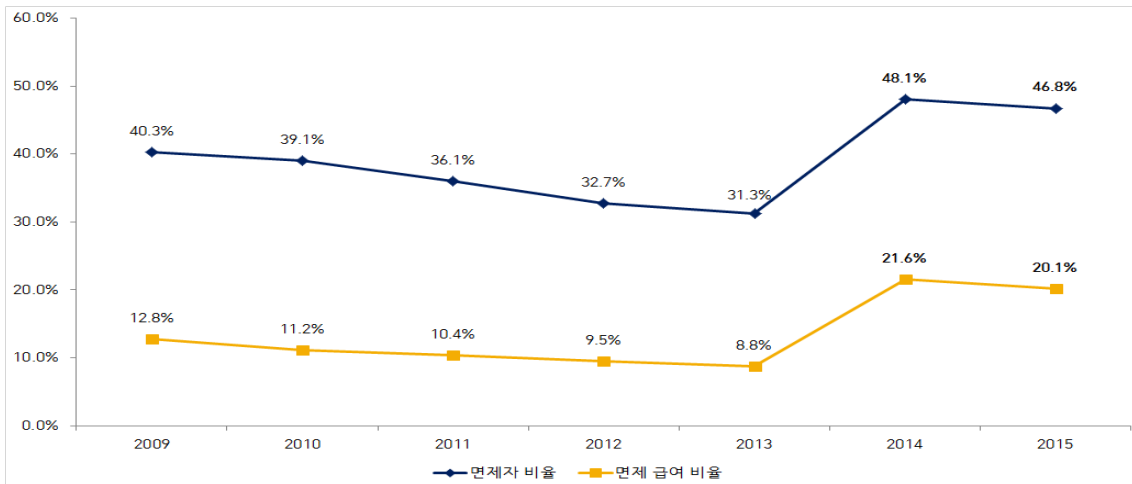
- 총급여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소득세가 100%가 면제되며, 1천만~1.5천만원의 경우에도 면제 비율이 5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상위 30~40%에 해당하는 3천만~4천만원 근로소득자도 면제 비율이 25% 증가하였고, 상위 25%에 해당하는 4천만~4.5천만원 근로소득자의 면제 비율도 17.6%나 증가함

□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3년에는 31.1%까지 축소되었으나, 세액공제 방식이 처음 도입된 2014년 48.1%까지 치솟음

- 2014년 48.1%, 2015년 46.8%로 40% 중후반대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음

[그림 V-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본 연구는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2014년과 2015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아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면제 비율과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면제 비율을 비교함

- 2014년 이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공제감면요건의 완화 또는 공제감면대상 항목의 확대가 면제 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
- 동일한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해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면제 비율과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면제 비율을 계산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

- 본 연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자 개인의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봄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보장성보험료와 기부금이지만, 두 항목만을 분리하여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4가지 특별공제항목 모두를 대상으로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를 분석함

-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샘플링자료의 대표성과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가정의 현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의 구성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구성과 차이가 있을 경우 표본선택의 오류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본 연구는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한 기타의 공제세액은 공제방식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를 분석함
 - 즉,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세액공제하에서 실제 공제받은 세액이 소득공제하에서도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함

나. 분석자료

- 본 연구는 2014년과 2015년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자료 3,400만건 중 전체의 약 6.1%에 해당하는 207만건을 샘플링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봄¹⁶⁾
 - 국세청이 제공한 샘플링자료는 2014년 1,043,447건, 2015년 1,032,237건으로 2014년과 2015년의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자료의 각각 6.25%와 5.96%에 해당함

- 『국세통계연보』 자료(전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 자료)와 국세청이 제공한 샘플링 자료의 총급여 규모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총급여 규모별 분포는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16)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 중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국세청 제공 자료상 산출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910개 표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2014년 총급여 1억원~2억원 구간에 속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비율이 모집단은 2.91%, 샘플링자료는 3.91%로 1.09%p의 차이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모집단과 샘플링자료의 급여규모별 분포 차이는 1%p 미만으로 나타남
- 『국세통계연보』 자료(전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 자료)와 국세청이 제공한 샘플링 자료의 면제 비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1%p 미만이나 변동 추세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임
 - 「국세통계연보」상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2014년 48.08%에서 2015년에는 46.76%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샘플링자료는 면제 비율이 2014년 47.21%에서 47.78%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표 V-2〉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비교

(단위: 명, %)

총급여규모별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인원	비중	비중	인원	비중	비중	인원	비중	비중	인원	비중	비중
합계	16,687,079	51.92	53.24	17,333,394	50.00	52.79	1,043,447	550,789	52.79	1,032,237	542,092	52.52
1천만 이하	52	0.00	0.00	59	0.00	0.00	-	-	0.00	-	-	0.00
1.5천만 이하	266,103	1.59	1.65	285,747	1.65	1.71	17,801	17,801	1.71	17,571	17,571	1.70
2천만 이하	1,161,038	6.96	6.65	1,153,233	6.65	7.22	75,303	75,303	7.22	69,214	69,214	6.71
3천만 이하	1,775,183	10.64	11.08	1,920,043	11.08	10.71	111,797	111,797	10.71	113,131	113,131	10.96
4천만 이하	1,258,446	7.54	7.75	1,344,127	7.75	7.44	77,634	77,634	7.44	78,853	78,853	7.64
4.5천만 이하	566,176	3.39	3.43	593,800	3.43	3.32	34,634	34,634	3.32	34,694	34,694	3.36
5천만 이하	516,498	3.10	3.13	542,545	3.13	3.03	31,602	31,602	3.03	31,617	31,617	3.06
6천만 이하	912,296	5.47	5.40	935,557	5.40	5.34	55,710	55,710	5.34	54,491	54,491	5.28
8천만 이하	1,183,494	7.09	7.44	1,290,131	7.44	6.89	71,938	71,938	6.89	74,907	74,907	7.26
1억 이하	498,992	2.99	3.28	569,275	3.28	2.92	30,457	30,457	2.92	33,108	33,108	3.21
2억 이하	469,182	2.81	3.07	531,870	3.07	3.91	40,755	40,755	3.91	30,851	30,851	2.99
3억 이하	33,429	0.20	0.22	37,649	0.22	0.18	1,876	1,876	0.18	2,045	2,045	0.20
5억 이하	14,921	0.09	0.10	17,112	0.10	0.08	811	811	0.08	926	926	0.09
10억 이하	5,565	0.03	0.04	6,112	0.04	0.03	325	325	0.03	351	351	0.03
10억 초과	1,868	0.01	0.01	1,904	0.01	0.01	146	146	0.01	333	333	0.03
소계	8,023,836	48.08	46.76	8,104,230	46.76	47.21	492,658	492,658	47.21	490,145	490,145	47.48
1천만 이하	3,492,042	20.93	20.83	3,610,162	20.83	20.85	217,590	217,590	20.85	220,494	220,494	21.36
1.5천만 이하	1,787,901	10.71	10.38	1,799,191	10.38	10.45	109,055	109,055	10.45	111,419	111,419	10.79
2천만 이하	793,572	4.76	4.67	808,667	4.67	4.61	48,086	48,086	4.61	48,044	48,044	4.65
3천만 이하	1,023,286	6.13	5.83	1,010,047	5.83	5.93	61,849	61,849	5.93	59,451	59,451	5.76
4천만 이하	615,489	3.69	3.37	584,068	3.37	3.57	37,242	37,242	3.57	33,903	33,903	3.28
4.5천만 이하	151,145	0.91	0.83	143,822	0.83	0.88	9,182	9,182	0.88	8,338	8,338	0.81
5천만 이하	83,999	0.50	0.46	79,796	0.46	0.48	5,042	5,042	0.48	4,635	4,635	0.45
6천만 이하	59,699	0.36	0.30	52,777	0.30	0.34	3,567	3,567	0.34	2,977	2,977	0.29
8천만 이하	14,176	0.08	0.08	13,098	0.08	0.08	872	872	0.08	760	760	0.07
1억 이하	1,086	0.01	0.01	1,125	0.01	0.00	50	50	0.00	52	52	0.01
1억 초과	1,441	0.01	0.01	1,477	0.01	0.01	123	123	0.01	72	72	0.01

주: 1) 전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로, 『국세통계연보』 자료 인용

2) 국세청이 총급여 규모 및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모집단과 유사하게 샘플링한 2014년과 2015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분석결과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장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계산한 결과,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 18.4%p, 2015년 19.6%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 2014년(2015년) 근로소득자의 면제 비율은 47.2%(47.5%)이나,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해 재계산한 2014년 면제 비율은 28.8%(27.9%)로 18.4%p(19.6%p)의 차이를 보임

-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구간은 총급여 1천만~1천 5백만원 구간임
 - 2014년(2015년)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되었다면 총급여 1천만~1천 5백만원인 근로자 중 86.0%(86.4%)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단지 18.5%(17.9%)만이 소득세를 납부함
 - 총급여 1천만원 미만 구간은 원래부터 면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면제 비율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2014년 5.5%, 2015년 6.6%)으로 나타남

-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으로 면제 비율이 상승한 구간은 총급여 4천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음
 - 총급여 5천만원을 기점으로 이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면제 비율 증가 폭이 사실상 0에 가까움

〈표 V-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

(단위: 명, %)

2014년						
총급여규모별 (원)	A. 표본 수	B. 세액공제 방식 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수(비율)		C. 소득공제 방식 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수(비율) ¹⁾		공제방식 변경효과 (B-C) ²⁾
0~1천만	217,590	217,590	100.0	205,603	94.5	5.5
1천만~1.5천만	126,856	109,055	86.0	23,492	18.5	67.4
1.5천만~2천만	123,389	48,086	39.0	16,581	13.4	25.5
2천만~3천만	173,646	61,849	35.6	21,719	12.5	23.1
3천만~4천만	114,876	37,242	32.4	17,201	15.0	17.4
4천만~4.5천만	43,816	9,182	21.0	7,271	16.6	4.4
4.5천만~5천만	36,644	5,042	13.8	4,494	12.3	1.5
5천만~6천만	59,277	3,567	6.0	3,497	5.9	0.1
6천만~8천만	72,810	872	1.2	832	1.1	0.1
8천만~1억	30,507	50	0.2	41	0.1	0.0
1억 초과	44,036	123	0.3	129	0.3	0.0
전체	1,043,447	492,658	47.2	300,860	28.8	18.4
2015년						
총급여규모별	A. 표본 수	B. 세액공제 방식 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수(비율)		C. 소득공제 방식 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수(비율) ¹⁾		공제방식 변경효과 (B-C) ²⁾
0~1천만	220,494	220,494	100.0	206,024	93.4	6.6
1천만~1.5천만	128,990	111,419	86.4	23,052	17.9	68.5
1.5천만~2천만	117,258	48,044	41.0	14,086	12.0	29.0
2천만~3천만	172,582	59,451	34.4	15,956	9.2	25.2
3천만~4천만	112,756	33,903	30.1	15,050	13.3	16.7
4천만~4.5천만	43,032	8,338	19.4	6,341	14.7	4.6
4.5천만~5천만	36,252	4,635	12.8	4,035	11.1	1.7
5천만~6천만	57,468	2,977	5.2	2,914	5.1	0.1
6천만~8천만	75,667	760	1.0	705	0.9	0.1
8천만~1억	33,160	52	0.2	43	0.1	0.0
1억 초과	34,578	72	0.2	83	0.2	0.0
전체	1,032,237	490,145	47.5	288,289	27.9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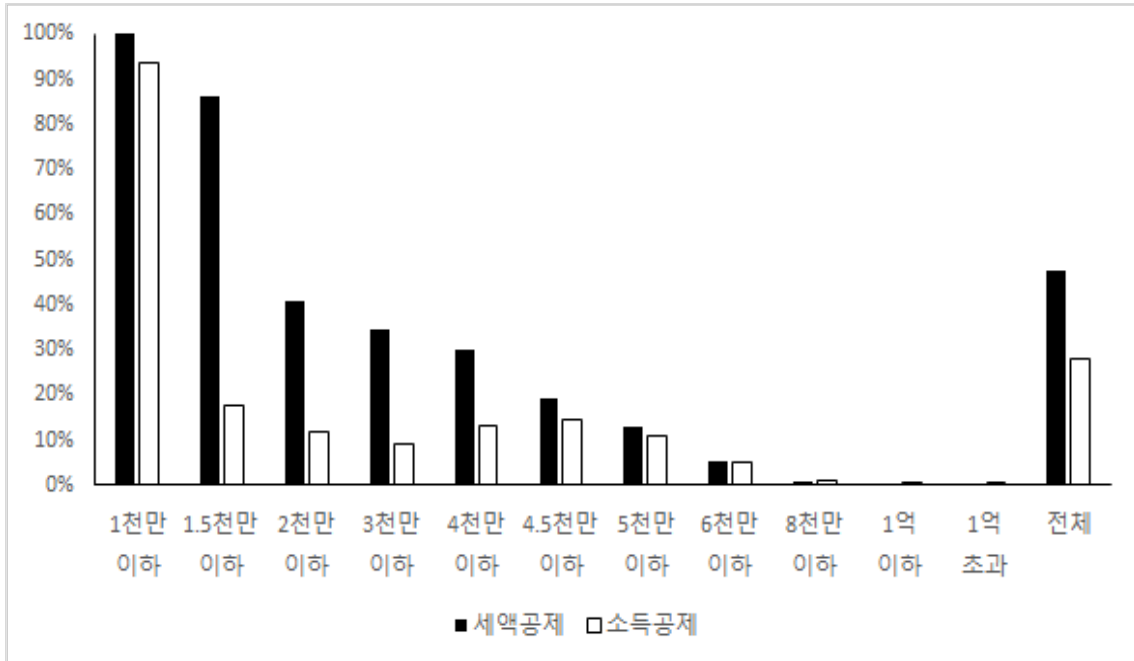
주: 1)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수(비율)

2) 소득공제 방식하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세액공제 방식 하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방식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2015년)

(단위: %)



주: 1.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수(비중)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3>을 <표 V-1>과 비교하면 샘플링 자료는 총급여 1천만~2천만원 구간의 면제 비율 증가 폭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표 V-3>에서 추정된 소득공제 방식하에서의 면세자 수(비중)는 2014년과 2015년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저소득 근로자의 면제 비율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저소득 근로자는 산출세액이 낮아 공제 가능금액 중 일부만 공제받았을 가능성이 높음
- 세액공제 방식에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나, 기존에 공제받지 못했던 금액을 활용하면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세부담이 0이 되어 실질적인 세부담 변동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세액공제 방식하에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알 수 있고, 산출세액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과대 추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추정과정상의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소득세 공제방식의 변경이 면세자 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난 만큼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최근 임금상승 등의 원인으로 면세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기반의 축소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2. 소득·세액공제의 타당성

- 사업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근로나 생계의 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적 성격을 지녔거나 법적으로 납부의무가 부여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줌
 -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에게나 납부의무가 부여된 지출에 대한 보전 성격이 강하며, 세액공제 항목은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으로 역진성 완화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함

〈표 V-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비교

구분	대상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가. 보험료 세액공제의 타당성 평가

- 보장성보험료는 사적 보험에 대한 지출로 지출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라면 보험가입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며, 납입금액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제공에 따른 필요경비적 성격이 강하고, 공제대상금액의 결정에 납세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 반면 보장성보험료는 가입 여부 및 납입금액의 결정이 순전히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공적보험료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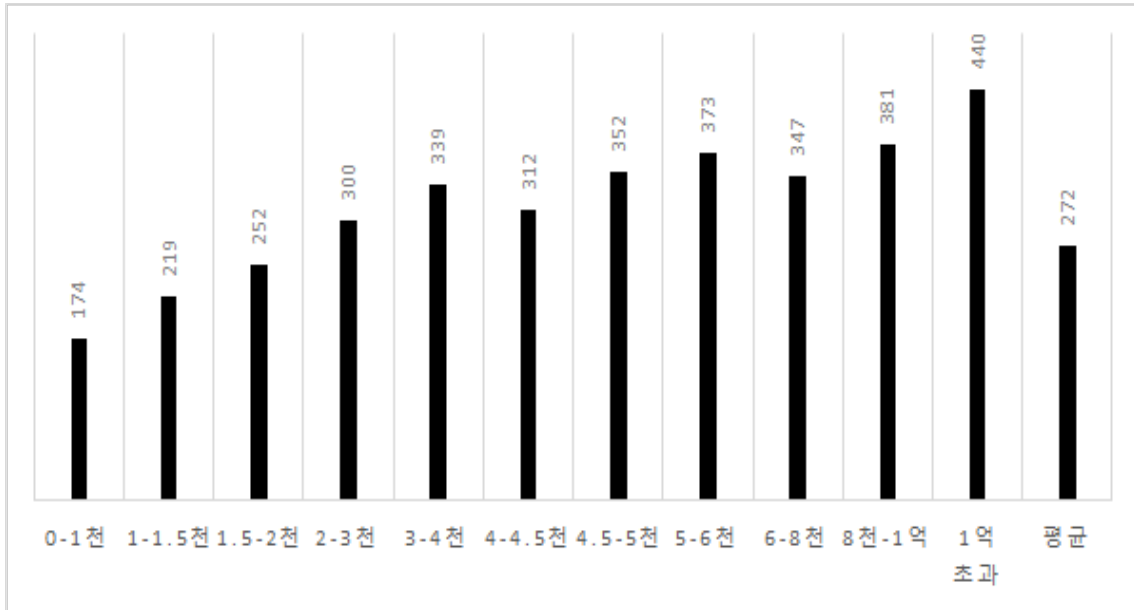
- 재정패널 제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장성보험료 지출이 증가함
 - 2015년 기준 총급여 1천만원 미만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174만원이나, 총급여 1억원 초과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440만원으로 2.5배 이상 많음

- 100만원의 공제한도로 인해 소득수준이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공제대상금액은 동일해도 가구마다 한계세율이 다르므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함
 - 모든 소득구간에서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 공제한도인 100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금액 차이는 사실상 없음
 - 총급여 1천만원 미만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 공제한도인 100만원을 초과함
 - 그러나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100만원을 공제받더라도 높은 한계세율을 가진 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보장성보험료는 지출 여부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소득공제를 허용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역진성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V-3] 총급여규모별 가구당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비교

(단위: 만원)



주: 1.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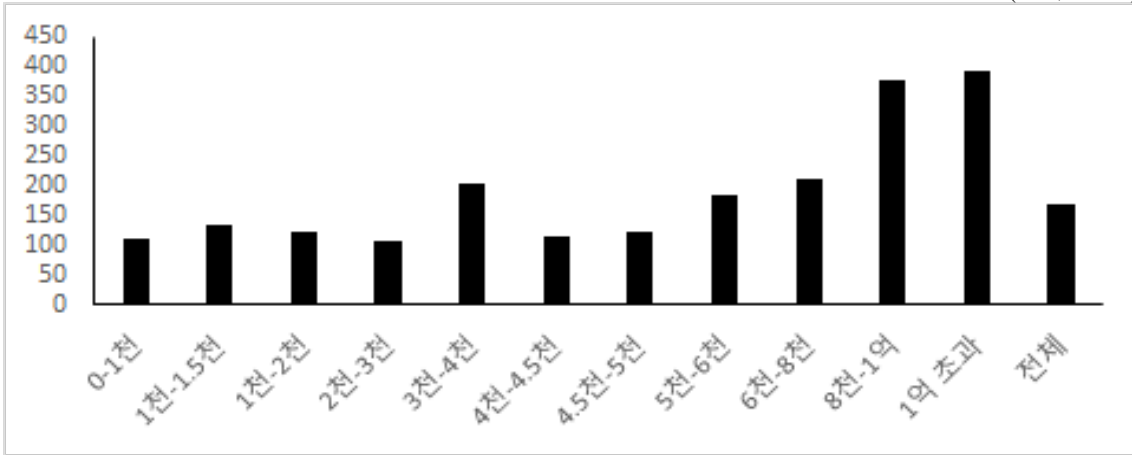
자료: 재정패널 제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기부금 세액공제의 타당성 평가

- 기부금은 근로나 생계유지와 관련성이 낮고,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가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에 따름
 - 선행연구(박기백, 2010)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수준 및 순자산, 거주지역, 가구주의 연령·성별·학별 등 가구의 특성이 기부금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침
- 재정패널 제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 지출이 증가함
 - 기부금 지출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총급여 1천만원 미만 가구의 기부금 지출액은 111만원이나 총급여 1억원 초과 가구의 기부금 지출액은 391만원으로 3.5배 이상 차이를 보임

[그림 V-4] 총급여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비교(2015)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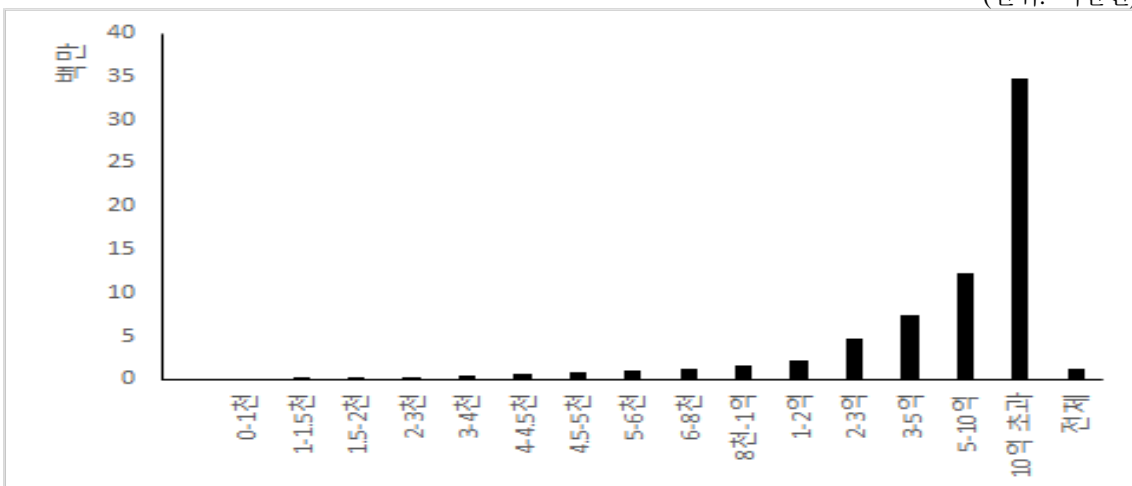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기부금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에 비례해 증가하고, 총액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가구일수록 공제대상금액이 많음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총급여 1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공제대상금액은 0원이나, 총급여 5억~10억원 구간과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의 기부금공제대상금액은 각각 1천 2백만원과 3천 4백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임

[그림 V-5] 총급여규모별 기부금공제대상금액 비교(2015)

(단위: 백만원)



주: 1. 2015년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기부금 지출은 생계유지와 관련된 필요경비라기보다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방식을 채택할 경우 형평성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가구별 지출금액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공제대상,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적정성

가. 공제대상의 적정성

1)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의 적정성

-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것을 말함
 - 보장성보험의 구체적 예로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법」·「군인공제회법」 등에 따른 공제 등이 있음
- 보장성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손실 중 공적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국가가 세금혜택을 통해 개인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됨
 - 보장성보험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적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을 통한 사적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 국가 중 보장성보험료 납입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는 전무함

2) 기부금 공제대상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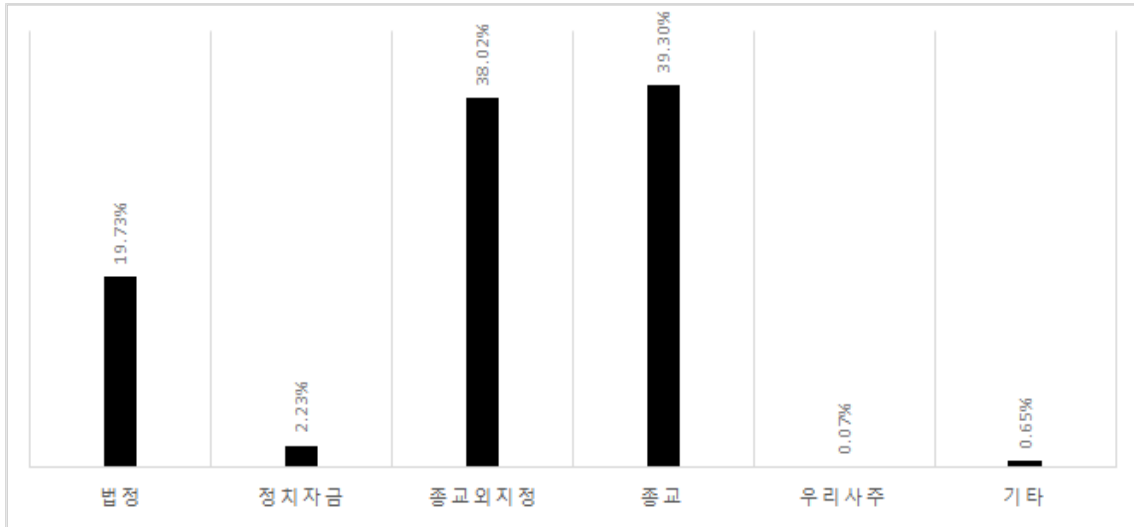
- 공제대상 기부금은 거주자 자신이 지급한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함
 -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공익성이 높은 기부금일수록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해 기부금 지출을 장려하고 있음

- 기부금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을 따르며, 개인에 한해 인정되는 예외적인 기부금 항목들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정치자금기부금, 노동조합회비, 자원봉사용역가액,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개인에 한해 인정되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항목들임

- 2015년 기준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종교단체기부금이 39.30%로 가장 많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38.02%, 법정기부금이 19.73%의 순서이며, 기타 기부금 항목은 5% 미만의 미미한 수준임
 - 공제대상기부금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 기부금을 집계한 것으로 법정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내 금액을 말함
 - 따라서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실제 구성내역과 공제대상기부금의 구성내역은 다를 수 있음

[그림 V-6] 기부금 공제대상금액¹⁾의 구성(2015)

(단위: %)



주: 1) 공제대상기부금(=한도 내 기부금으로 법정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체 공제대상기부금의 3분의 1 이상이 종교단체에 집중되어 있어 종교단체기부금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외부효과(공공성)가 높은 법정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30% 세액공제를 적용대상을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공제한도의 적정성

1)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한도의 적정성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보장성보험료의 1인당 공제대상금액은 평균 91만 4천원, 1인당 공제세액은 평균 10만 9천원임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서 1인당 공제대상금액이 공제한도인 100만원에 근접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인당 공제금액이 0원으로 나타난 것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V-5> 총급여규모별 보험료 공제대상 및 공제세액(2015년)

(단위: 명, 백만원, 원)

총급여규모별		공제대상 인원 (명)	공제대상 금액 (백만원)	공제세액 (백만원)		1인당 공제 금액(원)	1인당 공제 세액(원)
합계		8,135,106	7,435,522	892,808	100.00%	914,004	109,748
결정 세액 있는 자	소계	6,347,158	6,028,764	723,871	81.08%	949,837	114,046
	1천만 이하	0	0	0	0.00%	-	-
	1.5천만 이하	7,317	7,233	868	0.10%	988,520	118,628
	2천만 이하	208,871	203,607	24,441	2.74%	974,798	117,015
	3천만 이하	872,613	828,846	99,499	11.14%	949,844	114,024
	4천만 이하	1,038,597	948,228	113,833	12.75%	912,989	109,603
	4.5천만 이하	523,079	488,692	58,670	6.57%	934,260	112,163
	5천만 이하	494,309	466,670	56,027	6.28%	944,086	113,344
	6천만 이하	874,875	833,791	100,115	11.21%	953,040	114,433
	8천만 이하	1,233,526	1,189,153	142,805	16.00%	964,028	115,770
	1억 이하	544,932	529,243	63,563	7.12%	971,209	116,644
	2억 이하	499,651	485,972	58,369	6.54%	972,623	116,820
	3억 이하	30,905	29,675	3,563	0.40%	960,201	115,289
	5억 이하	12,909	12,352	1,483	0.17%	956,852	114,881
	10억 이하	4,298	4,093	491	0.05%	952,303	114,239
	10억 초과	1,276	1,209	145	0.02%	947,492	113,636
결정 세액 없는 자	소계	1,787,948	1,406,759	168,937	18.92%	786,801	94,487
	1천만 이하	36,839	6,499	780	0.09%	176,416	21,173
	1.5천만 이하	210,674	104,427	12,538	1.40%	495,681	59,514
	2천만 이하	371,878	283,187	34,004	3.81%	761,505	91,439
	3천만 이하	547,460	457,723	54,961	6.16%	836,085	100,393
	4천만 이하	373,411	320,670	38,511	4.31%	858,759	103,133
	4.5천만 이하	112,731	103,274	12,403	1.39%	916,110	110,023
	5천만 이하	70,159	67,215	8,075	0.90%	958,038	115,096
	6천만 이하	49,965	49,132	5,906	0.66%	983,328	118,203
	8천만 이하	12,532	12,413	1,493	0.17%	990,504	119,135
	1억 이하	994	963	116	0.01%	968,813	116,700
1억 초과	1,305	1,257	151	0.02%	963,218	115,7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은 2015년 기준 연평균 272만원임
 -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보장성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나, 소득규모에 따른 가구별 편차는 크지 않음
 - 최고소득 계층(총급여 1억원 초과)과 최저소득 계층(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급여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보장성보험료 차이는 2.53배에 불과함

- 현재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인 100만원은 최저소득 가구(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73.7만원의 57.6%에 불과해 실제 지출액에 비해 공제한도가 낮은 편임
 -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공제한도를 확대하더라도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상태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면 보장성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사실상 없으면서 소득세 면세자 비율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공적 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공적 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적 보험가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저소득 가구는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사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 가구에 한해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으로 분리해 별도의 한도규정을 둘 경우, 고가승용차 보유자의 보험료공제혜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가격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고가승용차를 보유한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향유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표 V-6> 총급여 규모별 보장성보험료 지출액¹⁾(2015년)

(단위: 만원)

총급여 규모별 ²⁾	가구주 1인당 지출액			가구당 지출액		
	보장성보험 (질병·상해·사망)	보장성보험 (자동차)	보장성보험 (총액)	보장성보험 (질병·상해·사망)	보장성보험 (자동차)	보장성보험 (총액)
1천만 이하	101.5	24.6	126.1	143.8	29.9	173.7
1.5천만 이하	146.0	25.3	171.3	188.5	30.4	218.9
2천만 이하	169.6	35.3	204.9	212.6	39.7	252.4
3천만 이하	191.4	44.6	236.0	250.9	48.7	299.6
4천만 이하	220.9	57.2	278.1	276.2	62.8	339.0
4.5천만 이하	241.4	51.0	292.4	258.8	53.0	311.9
5천만 이하	240.2	62.0	302.2	285.0	67.3	352.3
6천만 이하	243.9	58.8	302.7	308.2	65.1	373.4
8천만 이하	246.8	60.4	307.2	280.0	67.1	347.2
1억 이하	246.0	65.0	311.0	309.1	72.2	381.3
1억 초과	300.3	91.1	391.4	344.7	95.1	439.8
평균	177.7	41.8	219.6	225.4	46.9	272.4

주: 1)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기준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기부금 공제한도의 적정성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기부금 공제대상금액(한도 내 기부금지출액)은 1인당 평균 116만원, 공제세액은 1인당 평균 약 18만원임

○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이 증가하나, 급여수준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

- 총급여 10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3천 4백만원으로 총급여 1천만~1천 5백만원인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12만원의 약 272배에 달함
- 최저소득 계층인 총급여액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실적이 전무한데, 이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 기부금 공제대상자의 70% 이상이 총급여 4천 5백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전체 기부금 공제세액의 약 88%에 달함
 - 고소득자가 기부여력도 크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대상자의 70% 이상이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세액은 1%대 미만의 미미한 수준임

〈표 V-7〉 총급여규모별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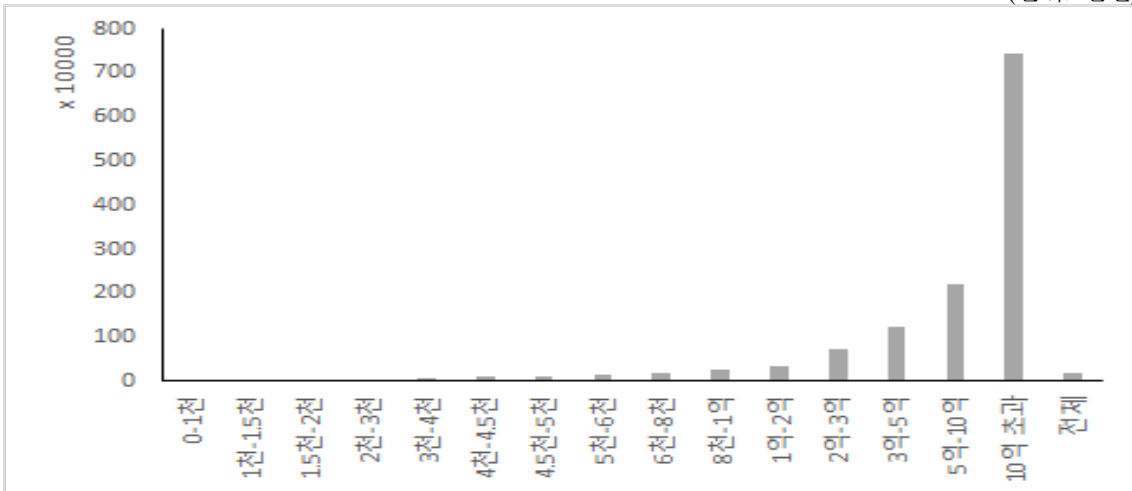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원, %)

총급여규모별	공제대상 인원 (명)	공제대상 금액 (백만원)	공제세액 (백만원)		1인당 공제대상 금액(원)	1인당 공제 세액(원)	
합계	4,412,626	5,115,485	788,302	100.00	1,159,284	178,647	
결정 세액 있는 자	소계	4,134,478	4,881,585	752,541	95.46	1,180,702	182,016
	1천만 이하	0	0	0	0.00	-	-
	1.5천만 이하	478	61	9	0.00	127,615	18,828
	2천만 이하	43,498	10,782	1,642	0.21	247,873	37,749
	3천만 이하	265,121	86,141	13,204	1.67	324,912	49,804
	4천만 이하	488,110	259,479	39,573	5.02	531,599	81,074
	4.5천만 이하	310,644	211,792	32,322	4.10	681,784	104,048
	5천만 이하	333,769	258,144	39,386	5.00	773,421	118,004
	6천만 이하	663,305	612,731	93,656	11.88	923,755	141,196
	8천만 이하	1,051,157	1,326,704	203,416	25.80	1,262,137	193,516
	1억 이하	485,844	808,297	123,604	15.68	1,663,697	254,411
	2억 이하	449,835	1,008,246	154,323	19.58	2,241,369	343,066
	3억 이하	25,952	120,614	18,750	2.38	4,647,580	722,488
	5억 이하	11,443	84,485	14,046	1.78	7,383,116	1,227,475
	10억 이하	4,027	49,131	8,959	1.14	12,200,397	2,224,733
	10억 초과	1,295	44,979	9,651	1.22	34,732,819	7,452,510
결정 세액 없는 자	소계	278,148	233,900	35,761	4.54	840,919	128,568
	1천만 이하	3,454	418	64	0.01	121,019	18,529
	1.5천만 이하	8,459	2,138	332	0.04	252,749	39,248
	2천만 이하	42,352	13,838	2,119	0.27	326,738	50,033
	3천만 이하	104,128	67,640	10,268	1.30	649,585	98,609
	4천만 이하	60,079	55,749	8,455	1.07	927,928	140,731
	4.5천만 이하	19,760	22,583	3,423	0.43	1,142,864	173,229
	5천만 이하	16,275	21,654	3,282	0.42	1,330,507	201,659
	6천만 이하	16,069	28,005	4,240	0.54	1,742,797	263,862
	8천만 이하	5,690	14,824	2,263	0.29	2,605,272	397,715
	1억 이하	763	2,132	351	0.04	2,794,233	460,026
1억 초과	1,119	4,918	964	0.12	4,394,996	861,48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그림 V-7] 총급여 규모별 1인당 기부금 공제세액(2015)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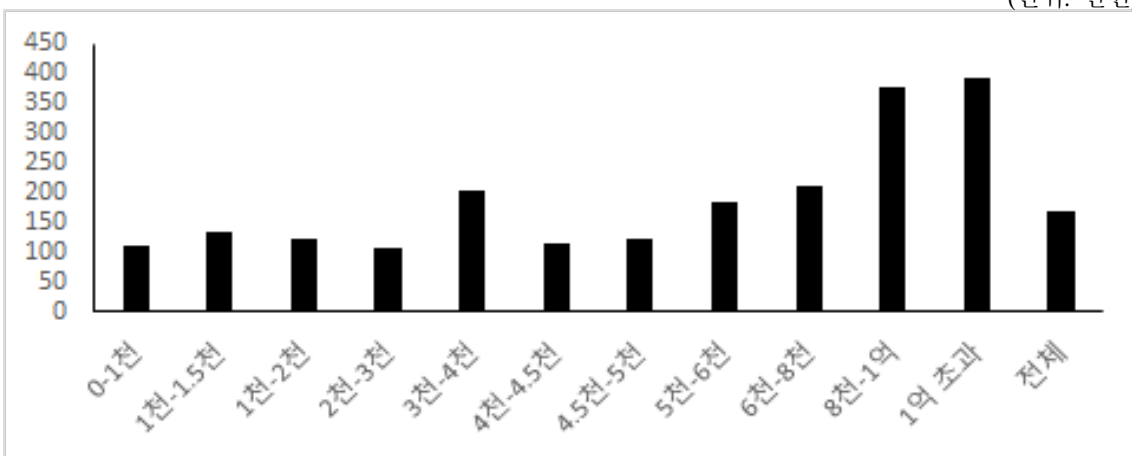


주: 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2015년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기부금 지출액은 평균 57만원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중 기부 실적이 있는 가구는 34%에 불과하였으며, 66%는 기부금 지출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기부금 지출가구만을 따로 분리하여 집계한 결과, 기부금 지출이 있는 가구의 기부금 지출액은 연평균 168만원(2015년 기준)으로 나타남

[그림 V-8]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2015)

(단위: 만원)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8>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¹⁾(2015년)

(단위: 만원, %)

총급여 규모별 ²⁾		기부금 지출액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	기타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	미공제 기부금	지출액 대비 미공제액
전체 가구 ³⁾	1천만 이하	26.26	25.75	0.51	26.24	100
	1.5천만 이하	32.81	30.83	1.98	31.65	96
	2천만 이하	31.44	28.82	2.61	29.08	93
	3천만 이하	32.82	28.79	4.03	22.87	70
	4천만 이하	75.66	62.90	12.76	57.16	76
	4.5천만 이하	58.50	50.07	8.43	25.85	44
	5천만 이하	63.30	49.87	13.43	30.70	49
	6천만 이하	86.56	79.88	6.68	32.04	37
	8천만 이하	121.96	101.24	20.72	50.76	42
	1억 이하	220.48	188.77	31.71	103.71	47
	1억 초과	261.00	207.69	53.31	75.03	29
	전 체	56.91	49.65	7.26	35.18	62
기부금 지출 가구 ⁴⁾	1천만 이하	111.12	108.97	2.14	111.06	100
	1.5천만 이하	136.23	128.02	8.21	131.45	96
	2천만 이하	124.38	114.04	10.34	115.07	93
	3천만 이하	106.34	93.27	13.07	74.11	70
	4천만 이하	203.15	168.89	34.26	153.48	76
	4.5천만 이하	117.00	100.14	16.86	51.70	44
	5천만 이하	124.79	98.31	26.47	60.53	49
	6천만 이하	183.57	169.40	14.17	67.95	37
	8천만 이하	211.28	175.38	35.90	87.93	42
	1억 이하	377.96	323.61	54.36	177.78	47
	1억 초과	391.50	311.53	79.97	112.54	29
	전 체	168.12	146.67	21.45	103.94	62

주: 1)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금액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3) 기부금 지출이 있는 가구와 기부금 지출이 없는 가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 가구의 평균값

4) 기부금 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값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기부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액이 기타 공익적 기부금 지출액에 비해 7배가량 많았음
- 특히,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와 총급여 5천만~6천만원인 중간 소득 계층의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이 90%를 초과해 다른 급여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낮아져 최고소득 계층(총급여 1억원 초과)은 기부금 지출액 중 29%가 미공제된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 가구의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2015년 기준 총급여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천 2백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지정기부금 한도는 약 9백 80만원임
 - 총급여 3천만~4천만원인 근로소득자 가구의 평균 기부금 지출액이 76만원임을 감안하면 공제한도 부족으로 미공제기부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2015년 기준 53.24%)이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다 보니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기부금 지출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 근로자는 납부세금이 충분해 기부금 지출이 세금공제 혜택으로 연결되나, 저소득 근로자는 납부세금 부족으로 기부금 지출이 세금공제 혜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추정됨

- 개인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고소득 가구에 기부금 공제혜택이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저소득 가구의 기부지출유인수단으로서 세금공제 혜택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다만, 고액기부가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만큼 고소득 가구에 대한 기부금 공제혜택 제한이 개인기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다. 공제율의 적정성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특별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기 때문임
 - 이론상 소득공제하의 유효세율이 세액공제율(최저 12%, 최고 30%)보다 낮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존에 소득공제 되던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액공제율이 유효세율보다 높으므로 지출규모가 달라지지 않아도 공제액은 크게 증가함
 -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은 2014년 10.55%, 2015년 10.63%로 보험료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보다 낮음

- 소득세 면세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세액공제율 인하는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으로 이미 한 차례 세부담 증가를 경험한 일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표 V-9>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유효세율¹⁾ 재계산

(단위: %)

총급여규모별	2014년		2015년	
	전체 ²⁾	결정세액 있는 자	전체 ²⁾	결정세액 있는 자
1천만 이하	1.26	6.00	1.56	6.00
1.5천만 이하	5.45	6.00	5.43	6.00
2천만 이하	5.83	6.00	5.82	6.00
3천만 이하	6.15	6.19	6.16	6.19
4천만 이하	7.61	7.71	7.64	7.76
4.5천만 이하	8.85	9.16	8.90	9.19
5천만 이하	9.61	9.90	9.66	9.93
6천만 이하	10.55	10.73	10.63	10.79
8천만 이하	11.93	11.97	11.95	11.99
1억 이하	14.22	14.22	14.23	14.23
1억 초과	19.12	19.11	19.55	19.54
전체	6.84	8.63	6.83	8.55

주: 1) 모든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재계산할 경우 유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

2)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결정세액이 없는 자 모두 포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소결

-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09년 40.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3년에는 31.1%까지 축소되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2014년에는 48.1%까지 치솟음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샘플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28.8%, 2015년 27.9%로 추정됨
 -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에 18.4%p, 2015년에 19.6%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위의 수치는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한 기타의 공제세액이 공제방식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의 대표성과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가정의 현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을 분리해 별도의 공제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공적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사적 사회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현재의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은 최저소득 가구의 연평균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73만원의 57% 수준에 불과해 실제 지출액보다 낮은 편임
 - 그러나 현 상태에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보장성보험의 신규가입을 유도하는 효과는 없으면서 소득세 면제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
 -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자동차보험과 기타의 보장성보험으로 분리해 별도의 한도규정을 둘 경우, 고가승용차 보유자의 보험료공제혜택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기부금 미공제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종교단체기부금 집중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증가해 최저소득 계층(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공제율은 10% 미만에 불과함
 -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기부유인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제대상기부금(한도 내 기부금)의 3분의 1 이상이 종교단체기부금에 집중되어 있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단체기부금 비중이 높음

- 보장성보험료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 면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별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낮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특별세액공제율 인하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이미 한 차례 세부담이 증가한 일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이에 따른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VI. 효과성 평가



VI. 효과성 평가

1. 소득재분배

- 소득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더 큰 세액혜택을 볼 수 있음
 - 반면 세액공제는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금액이 동일하면 세금혜택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장점이 있음
 - 해당 총급여 구간의 한계세율이 특별세액공제율인 12%나 1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방식에 비하여 세액공제 방식을 통한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본 연구는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부담에 미친 영향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함
 - 소득세 공제방식의 변경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은 세액공제하에서, 고소득층은 소득공제하에서 세부담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었다면 세액공제 방식하에서 세후지니계수가 소득공제 방식하에서 세후지니계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가.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친 효과 분석

1)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 변경이 근로소득자 1인당 세부담에 미친 효과 분석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부담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4개의 특별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2014년(2015년) 기준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4.6만원(4.1만원)의 세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4개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됐을 때 근로소득자 1인당 결정세액은 2014년(2015년) 기준 평균 170만원(171만원)임
 - 소득공제 방식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2015년)의 근로소득자 1인당 결정세액은 평균 165만원(167만원)임
 - 2014년(2015년)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하의 근로소득자 1인당 결정세액이 소득공제 방식하의 근로소득자 1인당 결정세액에 비해 4.6만원(4.1만원) 더 높음
- 2014년(2015년)의 경우 총급여 1천만~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1인당 3.6만~5.6만원(3.6만~5.7만원) 감소한 반면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1인당 0.3만~4백만원(0.2만~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는 공제 방식 변경으로 1인당 1백만원 이상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3천만원을 기점으로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가 달리 나타난 것은 총급여 3천만원을 기점으로 한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추정됨
- 총급여 3천만원 미만은 6% 한계세율이 적용돼 한계세율이 특별세액공제율보다 낮지만, 이를 초과하면 15% 한계세율이 적용돼 한계세율이 특별세액공제율보다 높음
- 총급여가 4천 5백만원인 독신자 1인 가구의 사례를 통해 공제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비교한 결과, 1백만원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이 있을 때 소득공제가 세액공제에 비해 3만원만큼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거주자 본인 이외에 공제대상자는 없고,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로 각각 총급여의 4.5%와 3.275%를 납부한 것으로 가정함

<표 VI-1>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비교

(단위: 천원)

2014년						
총급여규모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	결정세액		
				세액 공제 ¹⁾	소득 공제 ²⁾	차이
1천만 이하	4,664	2,930	1,734	-	-	-
1.5천만 이하	12,700	6,575	6,113	1	37	-36
2천만 이하	17,500	7,868	9,586	34	90	-56
3천만 이하	24,600	8,939	15,700	122	167	-45
4천만 이하	34,700	10,500	24,300	417	414	3
4.5천만 이하	42,400	11,600	30,800	853	836	17
5천만 이하	47,400	12,100	35,300	1,231	1,210	21
6천만 이하	54,800	12,500	42,300	1,895	1,870	25
8천만 이하	68,800	13,200	55,600	3,596	3,515	81
1억 이하	88,800	14,200	74,600	7,273	6,810	463
2억 이하	124,000	15,200	109,000	16,200	15,300	900
3억 이하	238,000	17,500	221,000	55,200	53,400	1,800
5억 이하	374,000	20,200	353,000	104,000	102,000	2,000
10억 이하	664,000	26,000	638,000	208,000	206,000	2,000
10억 초과	2,080,000	54,300	2,020,000	715,000	711,000	4,000
전체	32,500	8,598	23,900	1,701	1,655	46

2015년						
총급여규모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	결정세액		
				세액 공제 ¹⁾	소득 공제 ²⁾	차이
1천만 이하	5,022	3,115	1,906	-	-	-
1.5천만 이하	12,600	6,558	6,088	1	37	-36
2천만 이하	17,500	7,871	9,605	34	91	-57
3천만 이하	24,600	8,945	15,700	125	173	-48
4천만 이하	34,800	10,500	24,300	432	430	2
4.5천만 이하	42,400	11,600	30,800	882	865	17
5천만 이하	47,400	12,100	35,300	1,267	1,246	21
6천만 이하	54,900	12,500	42,400	1,967	1,942	25
8천만 이하	69,100	13,200	55,900	3,630	3,548	82
1억 이하	88,800	14,200	74,600	7,289	6,828	461
2억 이하	125,000	15,200	109,000	16,200	15,200	1,000
3억 이하	238,000	17,500	221,000	55,100	53,300	1,800
5억 이하	378,000	20,300	357,000	105,000	103,000	2,000
10억 이하	660,000	25,900	634,000	207,000	205,000	2,000
10억 초과	1,740,000	47,500	1,690,000	598,000	593,000	5,000
전체	32,300	8,581	23,700	1,715	1,67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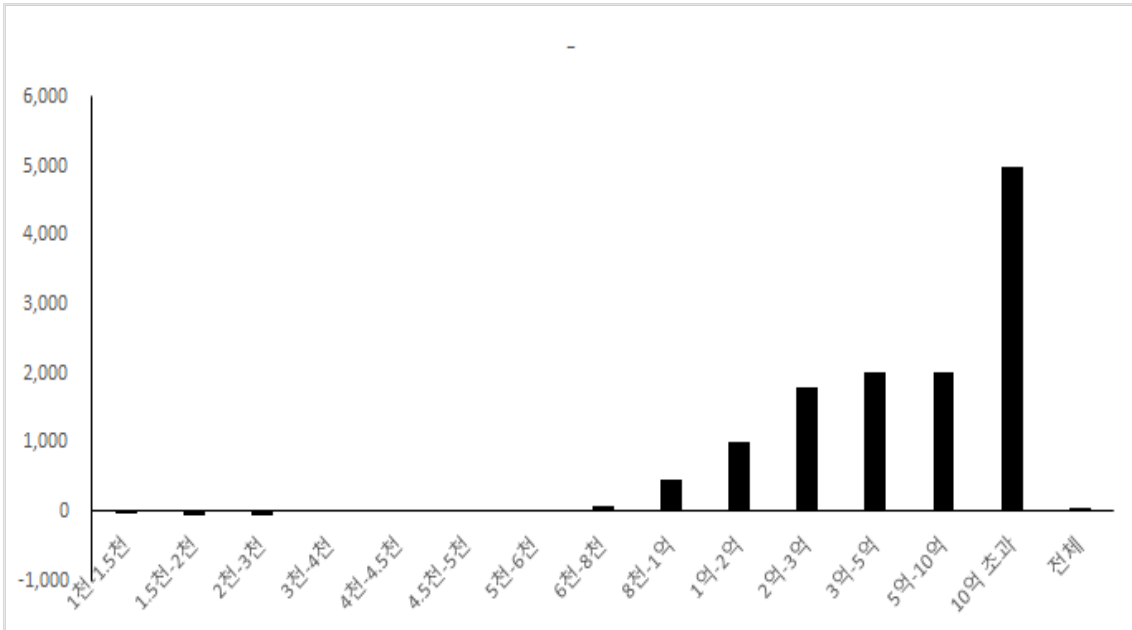
주: 1)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경우 결정 세액(납세자가 신고한 실제 소득세 결정세액)

2) 4개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재계산한 소득세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I-1]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비교

(단위: 천원)



주: 1.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경우 결정세액(납세자가 신고한 실제 소득세 결정세액)
 2. 4개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고 가정하고 재계산한 소득세 결정세액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득공제 방식하에서는 소득금액에서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이 계산되나, 세액공제 방식하에서는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하의 과세표준이 소득공제하의 과세표준보다 높음

○ 세액공제하에서의 과세표준은 28,000,935원으로 소득공제하의 과세표준 27,000,935원에 비해 1백만원이 높으며, 이러한 과세표준의 차이는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에서 비롯된 것임

□ 소득공제하에서는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에 해당 근로소득자의 한계세율(15%)을 곱한 금액(=1,000,000*15%)만큼 세금절감 효과가 발생하나, 세액공제하의 세금절감 금액은 (세율구간에 관계없이)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고정돼 있음

○ 이 때문에 한계세율이 특별세액공제율 12%보다 높은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유리함

<표 VI-2> 소득공제하에서와 세액공제하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 사례

기본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45,000,000원 • 독신자 1인 가구(거주자 본인 이외에 공제대상자 없음) •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2,025,000원 납부 • 건강보험료 = 총급여의 3.2757%, 1,474,065원 납부 • 보장성보험료 1,000,000원 납부 				
항목	세액공제하의 세부담		소득공제하의 세부담	
1. 총급여	45,000,000		45,000,000	
2. 근로소득공제	12,000,000	$=7,500,000+(45,000,000-15,000,000)\times 15\%$	12,000,000	$=7,500,000+(45,000,000-15,000,000)\times 15\%$
3. 근로소득금액(=1-2)	33,000,000		33,000,000	
4. 인적공제	1,500,000	1인×1,500,000	1,500,000	1인×1,500,000
5. 연금보험료공제	2,025,000		2,025,000	
6. 특별소득공제	1,474,065	건강보험료	2,474,065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1) 건강보험료	1,474,065		1,474,065	
(2) 보장성보험료	-		1,000,000	
7. 과세표준(=3-4-5-6)	28,000,935		27,000,935	
8. 산출세액	3,120,140	$=720,000+(28,000,935-12,000,000)\times 15\%$	2,970,140	$=720,000+(27,000,935-12,000,000)\times 15\%$
9. 세액공제	780,000		660,000	
(1) 특별세액공제	120,000	보험료세액공제 (=1,000,000×12%)	-	
(2)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Min[275,000+ (3,120,140-500,000)× 30%, 660,000]	660,000	Min[275,000+ (2,970,140-500,000)×30%, 660,000]
10. 결정세액(=8-9)	2,340,140		2,310,140	
차이			30,000	(=1,000,000*(15%-12%))

2) 보장성보험료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친 효과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보장성보험료 공제 방식 변경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부담이 증가한 근로소득자가 감소한 근로소득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전체 납세자의 약 29%는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13%는 세부담이 감소함

-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증가함
 - 총급여 4천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중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감소한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함

-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1천 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90% 이상이 소득공제하의 세부담과 세액공제 하의 세부담이 동일함
 - 총급여 1천 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면세점 이하거나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이 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 4천 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증가함

〈표 VI-3〉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과 세부담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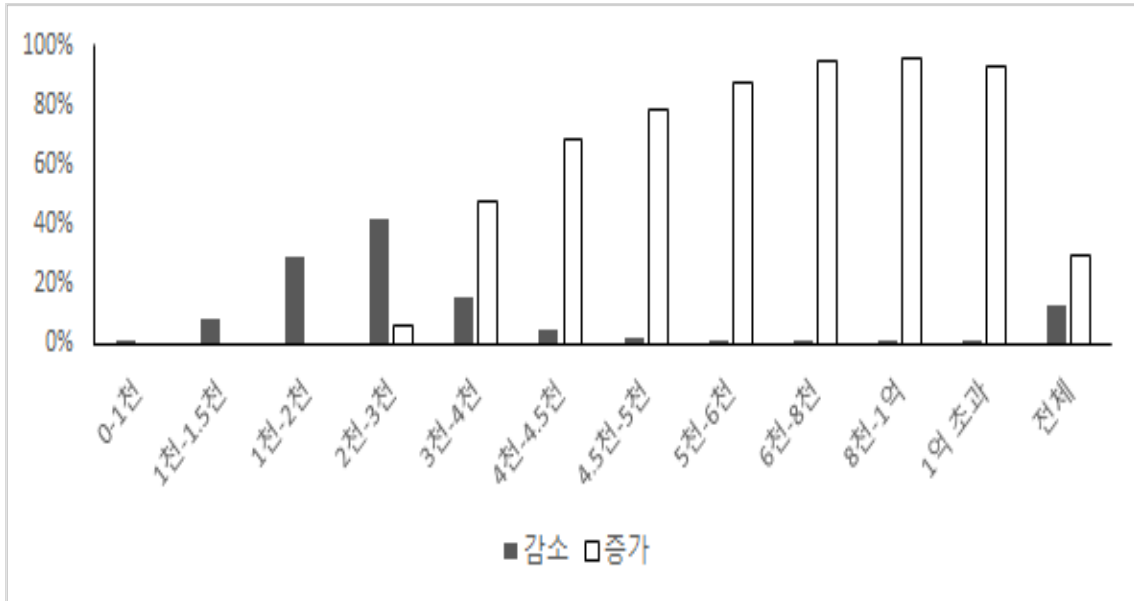
(단위: %)

총급여규모별	2014년			2015년		
	감소 ¹⁾	유지 ²⁾	증가 ³⁾	감소 ¹⁾	유지 ²⁾	증가 ³⁾
1천만 이하	0.18	99.82	0.00	0.17	99.83	0.00
1.5천만 이하	9.47	90.53	0.00	8.06	91.94	0.00
2천만 이하	27.18	72.82	0.00	29.09	70.91	0.00
3천만 이하	39.37	54.52	6.11	41.81	52.20	5.99
4천만 이하	14.56	38.53	46.91	15.37	37.06	47.57
4.5천만 이하	3.51	29.10	67.39	4.48	27.44	68.08
5천만 이하	1.17	21.00	77.83	1.85	20.24	77.91
6천만 이하	0.35	12.55	87.10	0.57	11.81	87.62
8천만 이하	0.16	5.88	93.95	0.24	5.60	94.16
1억 이하	0.14	4.81	95.05	0.12	4.83	95.05
1억 초과	0.07	6.66	93.27	0.09	7.38	92.53
전체	12.79	57.25	29.96	13.32	56.97	29.71

주: 1) 세액공제하의 세부담이 소득공제하의 세부담보다 낮은 납세자 비중
 2) 세액공제하의 세부담과 소득공제하의 세부담이 동일한 납세자 비중
 3) 세액공제하의 세부담이 소득공제하의 세부담보다 높은 납세자 비중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I-2]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과 세부담 증감(2015)

(단위: %)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만 4천원(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의 세부담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감소한 반면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함
 -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계층은 총급여 2천만~3천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로, 1인당 평균 1만 8천원(2015년,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의 세금이 감소함

-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는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11만원 늘어난 반면 총급여 1천 5백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하였으나, 그 효과는 2천원 미만임
 - 총급여 1천 5백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소폭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는 해당 급여구간의 면세자 비율이 높고, 면세자가 아니라도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VI-4>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¹⁾ 측정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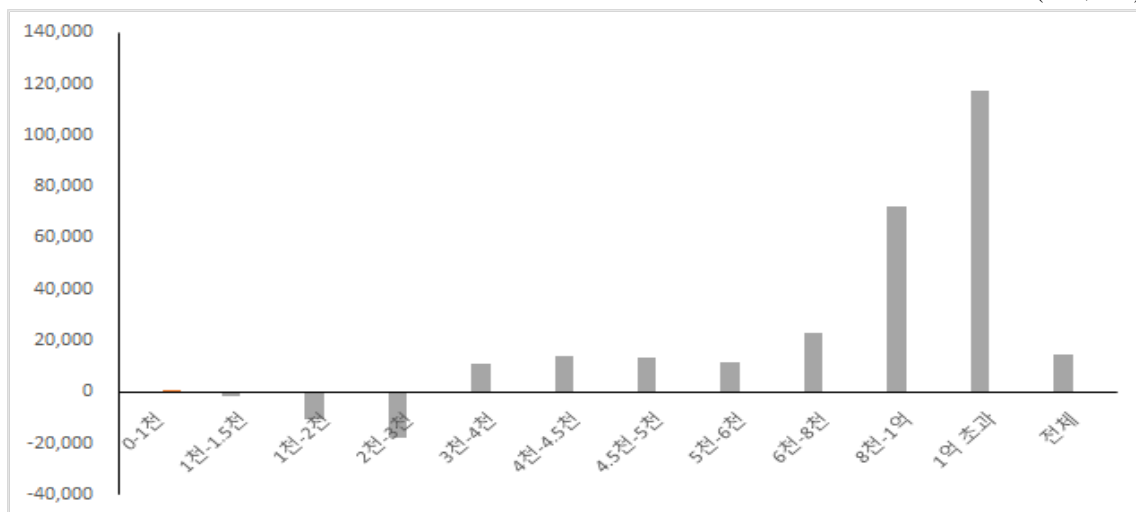
총급여규모별	2014년		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결정세액 없는 자	결정세액 있는 자	결정세액 없는 자
1천만 이하	-	-18	-	-16
1.5천만 이하	-1,834	-3,606	-1,689	-2,915
2천만 이하	-10,515	-19,757	-10,509	-21,777
3천만 이하	-17,598	-22,866	-18,047	-27,434
4천만 이하	11,517	-10,977	10,827	-12,036
4.5천만 이하	14,159	-2,283	13,854	-2,693
5천만 이하	12,951	-687	13,082	-1,068
6천만 이하	11,198	-210	11,514	-424
8천만 이하	22,643	-776	23,037	-1,251
1억 이하	71,751	-5,259	72,073	-4,933
1억 초과	115,146	-457	117,022	-2,738
전체	15,426	-6,488	14,253	-7,026

주: 1) (세액공제하의 결정세액-소득공제하의 결정세액) × 보험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I-3]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2015)

(단위: 원)



주: 1. 2015년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2. 변동효과: (세액공제하의 결정세액-소득공제하의 결정세액) × 보험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었지만, 최저소득 계층(총급여 1천 5백만원 이하)의 세부담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고, 총급여 3천만원 초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해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의 변경이 주는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3)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미친 효과

-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감소한 납세자는 2~3%에 불과한 반면 세부담이 증가한 납세자는 21%에 달해 7배 이상 차이를 보임
 - 2014년(2015년)의 경우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전체 납세자 중 2.61%(2.79%)는 세부담이 감소하였으나, 21.42%(20.65%)는 세부담이 증가함
-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소득계층은 총급여 4천 5백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총급여 6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80% 이상이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증가함
-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일부 중산층과 고소득층(총급여 6천만원 초과)의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공제방식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95% 이상이 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세부담과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의 세부담이 동일함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는 기부 여력이 부족해 기부금 지출액 자체가 적었을 가능성, 어떠한 공제방식을 적용하든 면세자에 해당해 세부담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났을 가능성,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VI-5> 기부금 공제방식 전환과 세부담 증감(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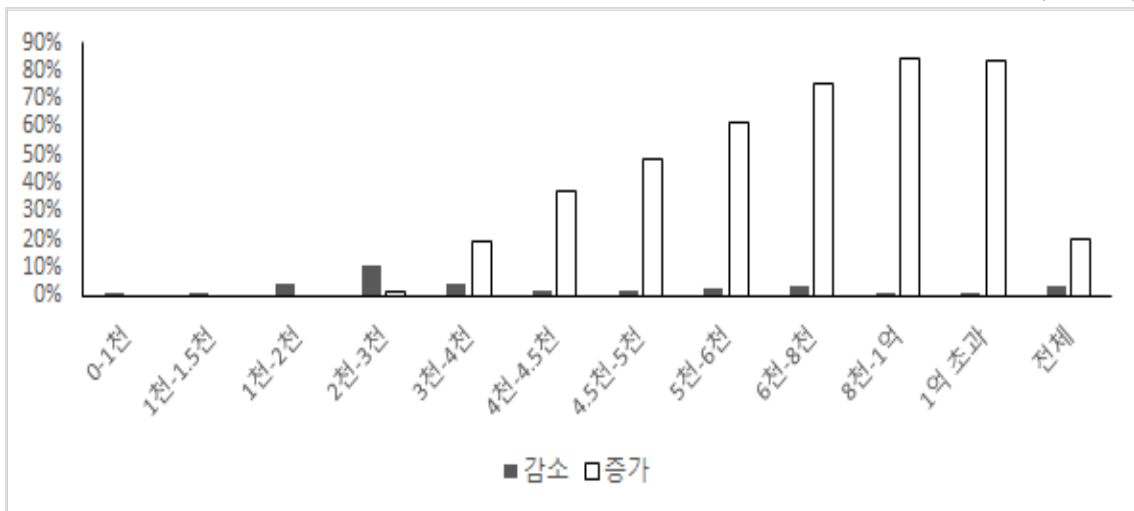
(단위: %)

총급여규모별	2014년			2015년		
	감소	유지	증가	감소	유지	증가
1천만 이하	0.01	99.99	0.00	0.01	99.99	0.00
1.5천만 이하	0.36	99.64	0.00	0.33	99.67	0.00
2천만 이하	4.22	95.78	0.00	4.29	95.71	0.00
3천만 이하	9.97	88.40	1.63	10.58	87.84	1.58
4천만 이하	3.18	75.70	21.12	3.71	76.20	20.08
4.5천만 이하	0.66	59.89	39.45	1.00	60.77	38.23
5천만 이하	0.32	48.22	51.47	0.49	49.85	49.67
6천만 이하	0.09	33.83	66.08	0.18	36.00	63.83
8천만 이하	0.08	20.17	79.75	0.12	20.89	78.99
1억 이하	0.12	14.61	85.27	0.10	15.28	84.63
1억 초과	0.06	15.96	83.98	0.07	16.53	83.40
전체	2.61	75.97	21.42	2.79	76.56	20.65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I-4] 기부금 공제방식 전환과 세부담 증감(2015)

(단위: %)



주: 1. 2015년 기준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후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 고소득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초과) 표본을 추출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 세액 공제율보다 낮은 한계세율,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배제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남
 -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나 공제·감면금액이 많아 한계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때문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나, 특별세액공제는 통합한도 규정이 없음

-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1인당 평균 35,746원(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의 세부담 증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3천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3천만원 초과구간은 세부담이 증가함
 -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계층은 총급여 2천만~3천만원에 속한 근로자로 1인당 평균 2,366원(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의 세금이 감소함

- 2014년(2015년)의 경우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총급여 1억원 초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인당 32만원(3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1천원 미만의 감소를 나타냄
 - 고소득층뿐 아니라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함께 증가함

〈표 VI-6〉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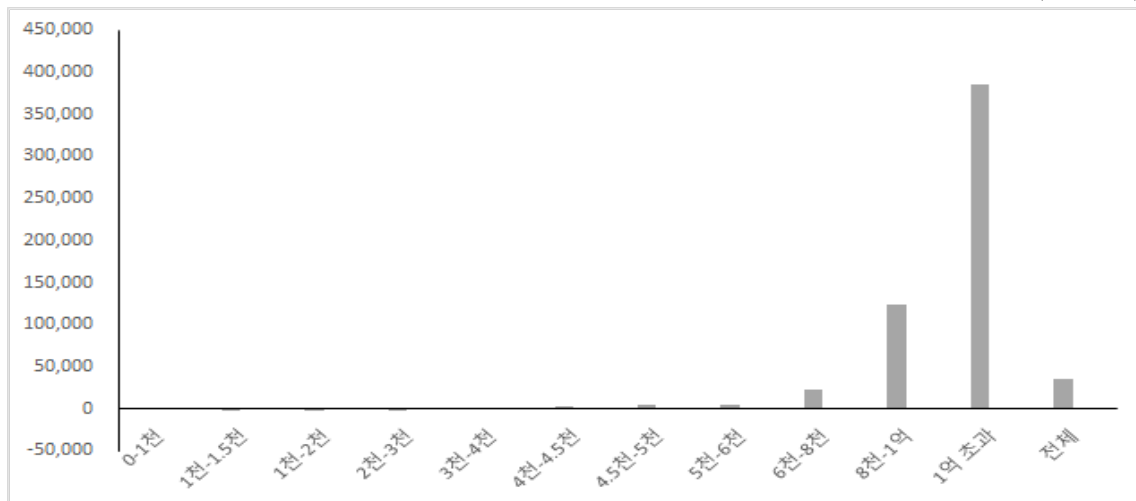
총급여규모별	2014년		2015년	
	결정세액 있는 자	결정세액 없는 자	결정세액 있는 자	결정세액 없는 자
1천만 이하	-	-1	-	-1
1.5천만 이하	-22	-98	-40	-86
2천만 이하	-751	-1,420	-807	-1,517
3천만 이하	-2,156	-4,017	-2,366	-5,145
4천만 이하	1,508	-1,255	1,332	-1,791
4.5천만 이하	3,419	-291	3,333	-439
5천만 이하	4,101	-125	4,073	-248
6천만 이하	4,806	-115	4,787	-304
8천만 이하	21,922	-752	22,877	-769
1억 이하	119,221	-5,095	123,380	-7,790
1억 초과	320,445	-941	385,236	-20,873
전체	35,612	-769	35,746	-933

주: 1. 변동효과: (세액공제하의 결정세액-소득공제하의 결정세액) × 기부금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I-5]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효과 측정

(단위: 원)



주: 1. 2015년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2. 변동효과: (세액공제하의 결정세액-소득공제하의 결정세액) × 기부금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합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으로 고소득층뿐 아니라 총급여 3천만원 초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해 사회 전반적으로 제고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총급여 2천만원 이하 최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은 크게 변동되지 않은 반면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절감효과가 총급여 2천만~3천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소득세 면세자만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함

나.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지니계수에 미친 효과 분석

-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0과 1 사이의 비율로 정의됨
 - 지니계수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소득세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됨
 - 세후지니계수 값이 세전지니계수 값보다 작다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하였다면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되는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세액공제하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세전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2014년(2015년) 기준 세전지니계수는 0.4803(0.4802)으로 나타남
 -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에 의한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295임
 -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을 이용한 계산결과이나,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 1인의 총급여를 이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됨
- 2014년(2015년)의 경우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재분배효과가 공제방식 변경 후 4.67%(4.90%)에서 4.39%(4.63%)로 0.28%p(0.27%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2015년 기준)

-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의 변경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2014년(2015년)의 경우 4개의 특별공제항목(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세후지니계수는 0.4578(0.4566)로 세전지니계수 0.4803(0.4802)에 비해 4.67%(4.90%)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나타냄
 - 2014년(2015년)의 경우 4개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세후지니계수는 0.4592(0.4579)로 세전지니계수 0.4803(0.4802)에 비해 4.39%(4.63%)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나타냄
 - 소득공제 공제방식을 적용했을 때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세액공제 방식에 비해 크게 나타남
- 단, 급여 총계 하위 10~30% 구간은 세액공제하에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소득공제하에서 소득분배 개선효과보다 크게 나타남
- 급여 총계 하위 10% 미만 구간은 면세자 비율이 높아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급여 총계 하위 10~30% 구간은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각각 0.03%p와 0.86%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5년 기준)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총급여 1천만~3천만원 구간에 속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낮추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공제방식의 변경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고, 총급여 1천만~3천만원 구간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줄었으나, 총급여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에 변동이 없고, 총급여 3천만원 초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VI-7>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재분배에 미친 영향

(단위: %)

2014년						
급여총계 규모별	세전지니계수	세후지니계수		소득분배 개선효과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체	0.4803	0.4578	0.4592	4.67	4.39	-0.28
상위 10% 내	0.2025	0.1679	0.1695	17.07	16.27	-0.79
상위 20% 내	0.0570	0.0570	0.0570	0.04	-0.01	-0.05
상위 30% 내	0.0473	0.0491	0.0492	-3.80	-3.84	-0.04
상위 40% 내	0.0427	0.0448	0.0449	-5.00	-5.30	-0.30
상위 50% 내	0.0409	0.0444	0.0448	-8.64	-9.43	-0.79
상위 60% 내	0.0394	0.0426	0.0427	-8.07	-8.35	-0.28
상위 70% 내	0.0426	0.0454	0.0454	-6.44	-6.58	-0.15
상위 80% 내	0.0594	0.0622	0.0617	-4.65	-3.86	0.79
상위 90% 내	0.1324	0.1358	0.1358	-2.62	-2.59	0.03
상위 100% 내	0.3111	0.3059	0.3059	1.67	1.67	0.00

2015년						
급여총계 규모별	세전지니계수	세후지니계수		소득분배 개선효과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체	0.4802	0.4566	0.4579	4.90	4.63	-0.27
상위 10% 내	0.2254	0.1846	0.1862	18.11	17.40	-0.71
상위 20% 내	0.0565	0.0569	0.0569	-0.73	-0.75	-0.02
상위 30% 내	0.0473	0.0484	0.0484	-2.32	-2.36	-0.04
상위 40% 내	0.0428	0.0444	0.0446	-3.73	-4.07	-0.34
상위 50% 내	0.0403	0.0431	0.0434	-7.07	-7.86	-0.79
상위 60% 내	0.0402	0.0426	0.0426	-5.98	-6.17	-0.18
상위 70% 내	0.0434	0.0455	0.0456	-4.74	-4.85	-0.12
상위 80% 내	0.0606	0.0631	0.0626	-4.10	-3.24	0.86
상위 90% 내	0.1031	0.1056	0.1056	-2.46	-2.43	0.03
상위 100% 내	0.3363	0.3287	0.3287	2.27	2.27	0.00

주: 1. 세전지니계수: 세전소득(급여총계)를 이용하여 측정
 2. 세후지니계수: 세후소득(=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을 이용하여 측정
 3. 개선효과=(세전지니계수-세후지니계수)/세전지니계수
 4. 세후소득이 0 이하인 표본은 지니계수 계산에서 제외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사업소득자와의 형평성 제고

-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 인정률은 85.2%이나,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율은 급여의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음
 -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은 47.1%로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율 87.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비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자에 비해 4배 이상 높지만,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2배 정도로 감소하는바,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비 과세표준은 52.9%로,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12.1%에 비해 4배 이상 높음
 -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은 급여의 5% 수준으로,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2.1%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으로 그 차이가 감소함

<표 VI-8>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세부담 비교(2015)

(단위: 백만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급여총계	566,729,049	100	총수입금액	911,306,071	100
비과세소득	(4,219,672)	0.7			
과세대상근로소득	562,509,592	99.3	필요경비 등	(776,495,893)	85.2
근로소득공제	(149,479,356)	26.4			
근로소득금액	413,030,236	72.9	과세소득	134,810,178	14.8
소득공제	(113,422,787)	20.0	소득공제	(23,353,751)	2.6
과세표준	299,607,449	52.9	과세표준	111,456,427	12.2
산출세액	40,417,739	7.1	산출세액	22,608,578	2.5
세액공제	(11,932,224)	2.1	세액공제	(2,270,153)	0.2
세액감면	(232,671)	0.0	세액감면	(1,074,834)	0.1
결정세액	28,252,845	5.0	결정세액	19,263,591	2.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5.

- 공제방식 변경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다면 공제방식 변경 후 급여(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의 차이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됨
 - 세액공제 방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비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차이가 소득공제 방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비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차이보다 적다면 공제방식 변경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세청이 무작위 추출 후 제공한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신고자료 50만건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2.07%로 나타남
 - 매출 100원당 소득세 부담이 2.07원으로 나타남

<표 VI-9> 사업소득자의 세부담(2015년)

(단위: 명, 백만원, %)

총수입금액 규모별	빈도	총수입 금액 ¹⁾	필요 경비 ¹⁾	종합소득 금액 ¹⁾	결정 세액 ¹⁾	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²⁾
1천만 이하	58,097	315,000	214,000	113,000	509	0.16
1.5천만 이하	33,678	422,000	279,000	133,000	1,790	0.42
2천만 이하	32,403	569,000	380,000	169,000	3,050	0.54
3천만 이하	54,058	1,340,000	893,000	385,000	9,290	0.69
4천만 이하	39,551	1,380,000	936,000	382,000	11,900	0.86
4.5천만 이하	16,541	702,000	487,000	187,000	6,570	0.94
5천만 이하	15,275	725,000	510,000	188,000	7,110	0.98
6천만 이하	24,717	1,360,000	956,000	350,000	14,800	1.09
8천만 이하	38,468	2,670,000	1,900,000	677,000	35,100	1.31
1억 이하	28,468	2,550,000	1,850,000	625,000	41,900	1.64
2억 이하	69,808	9,790,000	7,620,000	2,010,000	190,000	1.94
3억 이하	26,924	6,600,000	5,520,000	1,040,000	131,000	1.98
5억 이하	25,547	9,890,000	8,450,000	1,400,000	217,000	2.19
10억 이하	22,365	15,600,000	13,800,000	1,840,000	338,000	2.17
10억 초과	14,100	30,700,000	27,700,000	2,950,000	740,000	2.41
전체	500,000	84,600,000	71,500,000	12,500,000	1,750,000	2.07

주: 1) 총수입금액 구간별 합계금액

2) 해당 총수입금액 구간의 결정세액 합계/해당 총수입금액 구간의 총수입금액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I-10>은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을 때와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됐을 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비교한 결과로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세액공제하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5.32%로,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 5.20%보다 0.12%p가 더 높음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급여(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차이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방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공제방식 변경이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급여(총수입금액) 대비 결정세액 차이는 3.13%이나,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는 그 차이가 3.25%로 확대됨
 - 다만,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공제방식 변경으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일정 부분 효과가 인정됨

〈표 VI-10〉 근로소득자의 세부담(2015년)

(단위: 명, 백만원, %)

총급여규모별	빈도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	결정세액		총급여대비 결정세액		사업소득자와 차이		증감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소득 공제	
1천만 이하	220,494	1,110,000	687,000	420,000	-	106	0.00	0.01	-0.16	-0.15	-0.01
1.5천만 이하	128,990	1,630,000	846,000	785,000	175	4,810	0.01	0.30	-0.41	-0.13	-0.28
2천만 이하	117,258	2,050,000	923,000	1,130,000	3,970	10,600	0.19	0.52	-0.34	-0.02	-0.32
3천만 이하	172,582	4,250,000	1,540,000	2,710,000	21,500	29,800	0.51	0.70	-0.19	0.01	-0.20
4천만 이하	112,756	3,920,000	1,180,000	2,740,000	48,700	48,500	1.24	1.24	0.38	0.37	0.01
4.5천만 이하	43,032	1,830,000	500,000	1,330,000	37,900	37,200	2.07	2.03	1.14	1.10	0.04
5천만 이하	36,252	1,720,000	439,000	1,280,000	45,900	45,200	2.67	2.63	1.69	1.65	0.04
6천만 이하	57,468	3,150,000	718,000	2,440,000	113,000	112,000	3.59	3.56	2.50	2.47	0.03
8천만 이하	75,667	5,230,000	999,000	4,230,000	275,000	268,000	5.26	5.12	3.94	3.81	0.13
1억 이하	33,160	2,940,000	470,000	2,470,000	242,000	226,000	8.23	7.69	6.59	6.04	0.54
2억 이하	30,911	3,850,000	471,000	3,380,000	500,000	471,000	12.99	12.23	11.05	10.29	0.75
3억 이하	2,055	490,000	36,000	454,000	113,000	110,000	23.06	22.45	21.08	20.46	0.61
5억 이하	928	350,000	18,800	332,000	97,800	96,000	27.94	27.43	25.75	25.23	0.51
10억 이하	351	232,000	9,110	222,000	72,800	72,000	31.38	31.03	29.21	28.87	0.34
10억 초과	333	579,000	15,800	563,000	199,000	197,000	34.37	34.02	31.96	31.61	0.35
진체	1,032,237	33,300,000	8,860,000	24,500,000	1,770,000	1,730,000	5.32	5.20	3.25	3.13	0.12

주: 1. 총수입금액 구간별 합계금액

2. 해당 총급여 구간의 결정세액 합계/해당 총급여 구간의 총급여 합계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VI-6]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비교

(단위: %)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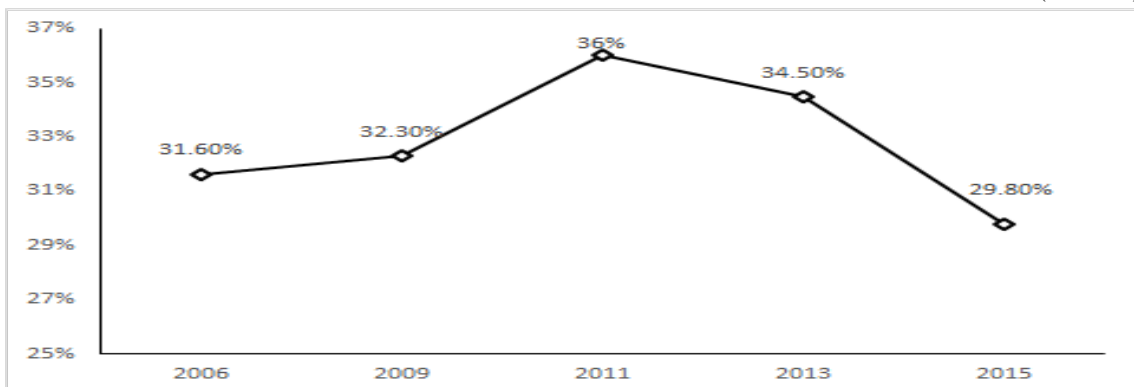
3. 개인 기부 활성화

가. 개인기부금 지출 현황

- 기부금 세액공제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개인기부금 비율 70%, GDP 대비 기부금 총액 비율 2.0% 달성임
- 15세 이상 인구의 기부 참여율은 2006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1년 36.0% 까지 높아졌으나, 2013년 34.5%, 2015년 29.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가장 큰 비중(64.2%)을 차지함

[그림 VI-7] 15세 이상 기부 참여율 추이(2006~2015)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총액은 2015년 기준 12.71조원으로 2006년 8.14조원 대비 약 1.56배가 증가함
 - 『국세통계연보』상 기부금총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고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미신고한 기부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부금총액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표 VI-11〉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2006~2015)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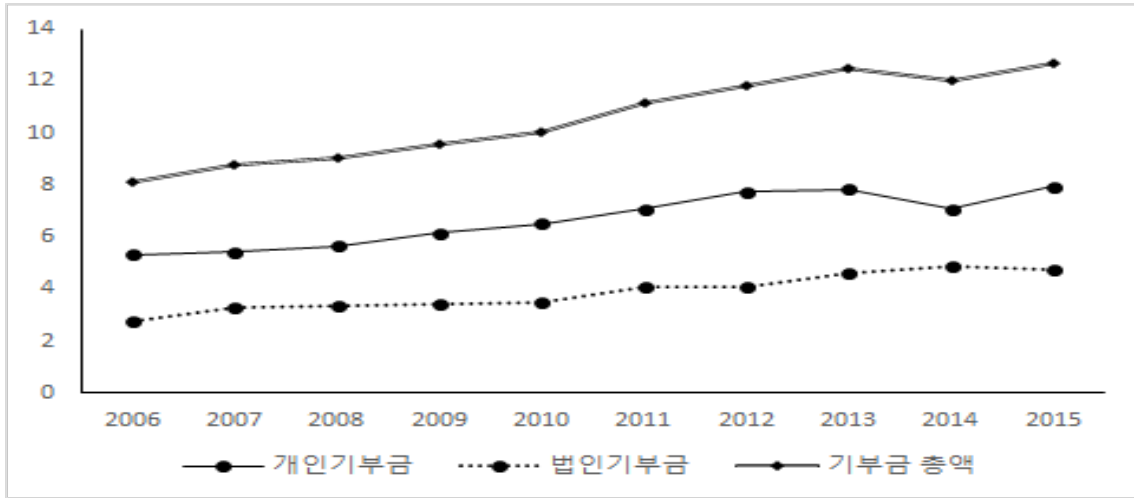
연도	개인기부금			법인 기부금	기부금 총액	개인 기부 비율	GDP 대비 비중
	소계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2006	5.34	4.2	1.14	2.8	8.14	66	0.84
2007	5.43	4.15	1.28	3.33	8.76	62	0.84
2008	5.67	4.27	1.4	3.38	9.05	63	0.82
2009	6.15	4.64	1.51	3.46	9.61	64	0.83
2010	6.53	4.86	1.67	3.5	10.03	65	0.79
2011	7.08	5.18	1.9	4.07	11.15	63	0.84
2012	7.73	5.54	2.19	4.11	11.84	65	0.86
2013	7.83	5.58	2.25	4.65	12.48	63	0.87
2014	7.10	5.15	1.95	4.91	12.01	59	0.81
2015	7.93	5.41	2.52	4.78	12.71	62	0.8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개인기부금 총액은 2006년 5.34조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7.83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있었던 2014년 7.10조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다시 7.93조원 수준으로 회복함
 - 2015년 개인기부금 총액이 공제방식 변경 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공제방식 변경이 개인기부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VI-8]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신고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2015년 기준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은 0.82%, 개인기부금 비율은 62%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 노력이 요구됨
 - 개인기부비율은 2006년 6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62%를 기록함
 - GDP 대비 기부금총액비율 역시 2006년 0.84%에서 2013년에는 0.87%까지 상승하였으나,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이 있었던 2014년을 기점으로 0.81%로 하락함

<표 VI-12> 개인기부비율(2006~2015)

(단위: 조원, %)

연도	개인기부비율	GDP 대비 기부금총액비율
2006	66	0.84
2007	62	0.84
2008	63	0.82
2009	64	0.83
2010	65	0.79
2011	63	0.84
2012	65	0.86
2013	63	0.87
2014	59	0.81
2015	62	0.82

주: 1. 개인기부비율=개인기부금/기부금총액
 2. GDP 대비 비중=기부금총액/명목 GDP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분석

- 기부금이 가격탄력적이면(즉,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 정부가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함¹⁷⁾
 - 개인기부규모를 g , 세금보조율을 t 라고 하면 세수 손실은 tg 가 되며, 세수손실만큼 정부가 민간의 자선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함
 - 자선단체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는 금액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때문에 감소한 정부보조금을 합산하면 $g-tg=1(1-t)g=pg$ 임
 - 세금보조율(t)을 높여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아질 때 기부규모가 감소해야 함
 -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delta(pg)/\delta p=g+p \times \delta g/\delta p < 0 \rightarrow \epsilon = -\frac{\delta g}{\delta p} \times \frac{p}{g} > 1$ 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후 개인기부의 유인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효과가 약화됐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기간(2012년과 2013년)과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기간(2014년, 2015년)으로 구분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함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후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아졌다면 개인 기부의 유인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이 가지는 효과성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부금 가격탄력성 측정모형은 선행연구(박기백, 2010 등)를 참조하였으며, 재정패널 6차~9차연도(2012~2015년) 자료를 이용해 측정함
 -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구단위로 분석함
 -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에는 기부행위의 동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함¹⁸⁾

17) 박기백(2010), p. 146

18)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경우 조세정책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선택의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제외함(박명호·전병목, 2016)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아래 모형에서 기부가격(CPR)의 회귀계수 값 α_1 으로 측정됨
 - 재정패널자료 중 70% 정도 가구의 기부금지출액이 0이기 때문에 random-effect Tobit 모형을 사용해 분석함
 - 소득공제 기간의 기부가격은 ‘1-가구주의 한계세율’로, 세액공제 기간의 기부가격은 ‘1-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15%/25%)’로 측정함

검증모형

$$LCON_{ht} = \alpha_0 + \alpha_1 CPR_{ht} + \beta_1 LNETINC_{ht} + \beta_2 AGE_{ht} + \beta_3 METRO_{ht} + \beta_4 EDU_{ht} + \beta_5 OWNH_{ht} + \beta_6 MAR_{ht} + \beta_7 LASSET_{ht} + \beta_8 FNUM_{ht} + \beta_9 FEMALE_{ht}$$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 LCON* = 가구별 기부금지출액(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 LRELCON* = 가구별 종교단체기부금지출액(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 LPICON* = 가구별 공익적기부금지출액(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관심변수

- PR* = 기부가격(2014년 이전에는 1-가구주의 한계세율, 2014년 이후에는 1-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통제변수

- LNETINC* = 해당 가구의 순소득(=총소득-총지출, 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 AGE* = 가구주의 연령;
- METRO* = 해당 가구의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면 1, 아니면 0;
- EDU* =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재학 이상이면 1, 아니면 0;
- OWNH* =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 MAR* = 가구주가 기혼이면 1, 아니면 0;
- LASSET* = 당기 가구순자산(만원)의 자연로그 값;
- FNUM* = 가구원 수;
- FEMALE* =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이면 1, 아니면 0.

- <표 VI-13>은 전체 근로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한 결과로 공제방식 변경 이후에도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개인 기부의 유인수단으로서 여전히 유의한 효과를 가지나, 종교단체기부금은 그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2012년과 2013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모형 1), 기부금의 가격탄력성(22.882)이 1보다 크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됐던 2014년과 2015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모형 2), 기부금의 가격탄력성(19.991)이 1보다 크고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공제 적용기간에는 가격탄력성(21.801)이 1보다 크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모형 2), 세액공제 적용기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모형 5)

<표 VI-13>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전체 근로소득자 가구)

변수명	소득공제 적용기간(2012년, 2013년)			세액공제 적용기간(2014년, 2015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종속변수= LCON	종속변수= LRELCON	종속변수= LPICON	종속변수= LCON	종속변수= LRELCON	종속변수= LPICON
CPR	-22.882*** (-14.787)	-21.801*** (-8.898)	-22.973*** (-11.848)	-19.991* (-1.847)	-2.231 (-0.134)	-27.698** (-2.221)
LNETINC	-0.109*** (-4.270)	-0.214*** (-5.181)	-0.016 (-0.512)	0.034 (1.290)	-0.078** (-2.031)	0.147*** (4.077)
AGE	0.018** (2.021)	0.109*** (7.471)	-0.075*** (-6.334)	0.006 (0.719)	0.090*** (6.961)	-0.103*** (-7.917)
METRO	-0.686*** (-3.754)	-0.695** (-2.357)	-0.508** (-2.220)	0.839*** (4.476)	1.615*** (5.903)	-0.016 (-0.064)
EDU	0.622 (0.928)	1.314 (1.251)	-0.070 (-0.073)	0.627 (0.923)	0.833 (0.898)	1.541 (1.211)
OWNH	0.437** (2.190)	-0.279 (-0.868)	0.894*** (3.567)	0.482** (2.281)	0.285 (0.931)	0.462* (1.670)
MAR	0.863** (2.472)	1.714*** (2.920)	0.403 (0.907)	1.489*** (4.270)	2.279*** (4.386)	0.547 (1.161)
LASSET	0.158*** (3.345)	0.139* (1.881)	0.289*** (4.149)	0.272*** (5.526)	0.181*** (2.631)	0.527*** (6.439)
FNUM	0.335*** (3.642)	0.595*** (3.990)	0.091 (0.782)	0.250*** (2.644)	0.317** (2.325)	0.287** (2.262)
FEMALE	0.996*** (2.935)	1.875*** (3.333)	0.281 (0.639)	0.912*** (2.831)	2.171*** (4.568)	-0.734 (-1.625)
Constant	13.586*** (7.962)	2.856 (1.053)	14.801*** (6.670)	11.207 (1.030)	-14.028 (-0.837)	17.671 (1.403)
N	5,043	5,043	5,043	5,237	5,237	5,237
Chi ²	462.383***	236.819***	374.472***	192.808***	185.658***	220.618***
Likelihood	-6689.399	-4603.489	-3821.254	-6776.807	-4930.899	-3427.644
Pseudo R ²	0.033	0.025	0.047	0.014	0.018	0.031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재정패널 6~9차 자료(2012~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I-14>는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홑벌이 근로소득자 가구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재분석한 결과임

○ 복수의 가구원이 소득을 창출했고, 소득규모가 상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홑벌이 근로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표 VI-13>을 재검증함

□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홑벌이 근로소득자 가구를 이용한 분석결과, 소득공제 적용기간에는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고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세액공제 적용기간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개인기부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부금의 종류(기부금 총액, 종교단체기부금, 기타 공익적 기부금)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남

<표 VI-14> 기부금의 가격탄력성(홑벌이 가구)

변수명	소득공제 적용기간(2012년, 2013년)			세액공제 적용기간(2014년, 2015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종속변수= LCON	종속변수= LRELCON	종속변수= LPICON	종속변수= LCON	종속변수= LRELCON	종속변수= LPICON
CPR	-19.952*** (-10.896)	-16.490*** (-5.898)	-22.903*** (-9.781)	-40.664 (-1.629)	-25.241 (-0.741)	-35.287 (-1.195)
LNETINC	-0.145*** (-4.681)	-0.220*** (-4.566)	-0.060 (-1.550)	-0.011 (-0.340)	-0.090** (-2.020)	0.088* (1.912)
AGE	0.023** (2.208)	0.110*** (6.713)	-0.073*** (-5.144)	0.009 (0.831)	0.084*** (5.779)	-0.098*** (-6.042)
METRO	-0.518** (-2.403)	-0.649* (-1.929)	-0.259 (-0.943)	1.078*** (4.704)	1.624*** (5.137)	0.366 (1.144)
EDU	1.223 (1.576)	1.484 (1.300)	1.197 (0.936)	1.060 (1.368)	1.078 (1.079)	3.851* (1.856)
OWNH	0.288 (1.230)	-0.500 (-1.377)	0.735** (2.469)	0.550** (2.123)	0.370 (1.044)	0.397 (1.105)
MAR	0.919** (2.433)	2.129*** (3.460)	0.118 (0.240)	1.625*** (4.157)	2.256*** (4.067)	0.844 (1.533)
LASSET	0.161*** (2.950)	0.165** (1.989)	0.270*** (3.289)	0.228*** (3.975)	0.168** (2.176)	0.420*** (4.441)
FNUM	0.532*** (4.968)	0.875*** (5.217)	0.173 (1.253)	0.302*** (2.656)	0.516*** (3.312)	0.156 (0.970)
FEMALE	1.091*** (2.966)	2.046*** (3.423)	0.178 (0.368)	0.846** (2.354)	1.974*** (3.855)	-0.797 (-1.530)
Constant	9.896*** (4.912)	-2.673 (-0.864)	13.712*** (5.003)	31.748 (1.271)	9.337 (0.274)	23.812 (0.804)
N	3,490	3,490	3,490	3,501	3,501	3,501
Chi ²	356.074***	215.897***	266.642***	177.625***	177.394***	126.493***
Likelihood	-4653.170	-3305.067	-2561.127	-4464.345	-3408.776	-2100.793
Pseudo R ²	0.037	0.032	0.049	0.020	0.025	0.029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재정패널 6차~9차 자료(2012년~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전반적으로 <표 VI-13> 그리고 <표 VI-14>의 분석결과는 공제방식 변경 후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가구의 기부지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이후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기부행태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DID(difference-in-difference)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
 - 관심변수는 CHG와 HTR 그리고 LTR의 상호작용변수로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후(2014년 이후) 고소득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기부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면 상호작용변수(HTR*CHG 또는 LTR*CHG)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검증모형

$$LCON_{ht} = \alpha_0 + \alpha_1 HTR_{ht} + \alpha_2 LTR_{ht} + \alpha_3 CHG_{ht} + \alpha_4 HTR_{ht} \times CHG_{ht} + \alpha_5 LTR_{ht} \times CHG_{ht} + Controls$$

변수의 정의:

종속변수

- LCON = 가구별 기부금지출액(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 LRELCON = 가구별 종교단체기부금지출액(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 LPICON = 가구별 공익적기부금지출액(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관심변수

- HTR = 가구주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이면 1, 아니면 0;
- LTR = 가구주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1, 아니면 0;
- CHG =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는 기간(2014년 이후)이면 1, 아니면 0;

통제변수

- LNETINC = 해당 가구의 순소득(=총소득-총지출, 단위: 만원)의 자연로그 값;
- AGE = 가구주의 연령;
- METRO = 해당 가구의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면 1, 아니면 0;
- EDU =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재학 이상이면 1, 아니면 0;
- OWNH =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 아니면 0;
- MAR = 가구주가 기혼이면 1, 아니면 0;
- LASSET = 당기 가구순자산(만원)의 자연로그 값;
- FNUM = 가구원 수;
- FEMALE =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이면 1, 아니면 0.

- DID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 공제방식 변경이 고소득가구 또는 저소득가구의 기부금 지출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적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음
 - 상호작용변수인 HTR*CHG, LTR*CHG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평균적으로 고소득가구는 기부금 지출이 많고, 저소득가구는 기부금 지출이 적고, 공제방식 변경 후 기부금지출이 줄었지만, 고소득가구 또는 저소득가구의 기부행태가 공제방식 변경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VI-15> DID기법을 이용한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종속변수=LCON	종속변수=LRELCON	종속변수=LPICON
HTR	1.898*** (6.025)	1.617*** (3.465)	2.080*** (5.560)
LTR	-2.446*** (-9.614)	-1.888*** (-5.001)	-3.216*** (-9.100)
CHG	-0.674*** (-3.219)	-0.051 (-0.161)	-1.285*** (-4.877)
HTR*CHG	0.527 (1.265)	0.336 (0.547)	0.737 (1.482)
LTR*CHG	0.442 (1.316)	0.303 (0.622)	-0.158 (-0.306)
LNETINC	-0.131*** (-5.801)	-0.193*** (-5.816)	-0.067** (-2.273)
AGE	0.034*** (4.408)	0.110*** (9.516)	-0.061*** (-5.511)
METRO	0.085 (0.546)	0.372 (1.625)	-0.185 (-0.896)
EDU	1.106** (2.050)	1.238* (1.656)	1.969* (1.838)
OWNH	0.301* (1.751)	-0.150 (-0.595)	0.456** (2.018)
MAR	1.052*** (3.905)	1.995*** (4.847)	0.167 (0.457)
LASSET	0.123*** (3.161)	0.109* (1.943)	0.221*** (3.720)
FNUM	0.298*** (3.840)	0.598*** (5.227)	-0.012 (-0.113)
FEMALE	1.395*** (5.377)	2.354*** (5.935)	0.393 (1.099)
Constant	-6.673*** (-8.569)	-15.444*** (-13.055)	-5.683*** (-4.360)
N	6,991	6,991	6,991
Chi ²	662.772***	412.749***	567.437***
Likelihood	-9056.552	-6704.647	-4586.642
Pseudo R ²	0.035	0.030	0.058

주: 1.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홀별이 가구를 대상으로 random effect tobit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재정패널 6차~9차 자료(2012~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14년 1,102억원, 2015년 1,201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액을 추산한 후, 여기에 『국세통계연보』상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총인원을 곱해 세수증가금액을 추산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공제방식 변경으로 354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으나,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1,4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1,102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함(2014년 기준)
 -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급여구간은 총급여 2천만~3천만원 사이로 2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급여구간은 총급여 1억~2억원 사이로 492억원의 세수 증가가 발생함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해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14년 2,202억원, 2015년 2,588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변동액을 추산한 후, 여기에 『국세통계연보』상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 총인원을 곱해 세수증가금액을 추산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수가 감소하나,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구간은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수가 증가함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구간의 세수 감소규모는 9억원에 불과하며,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세수가 2,211억원 늘어 결과적으로 2,20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함
 -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총급여 1억~2억원 사이로 1,060억원의 세수가 증가함

<표 VI-16>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4년)

(단위: 명, 원, 백만원, %)

총급여규모별		공제대상 총인원	1인당 절세금액	세수증가	비중
합계	전체	7,695,994	730,929	110,284	100.0
결정세액 있는 자	소계	5,944,706	797,825	133,611	121.2
	1천만 이하	-	-	-	0.0
	1.5천만 이하	7,700	-1,834	-14	0.0
	2천만 이하	216,755	-10,515	-2,279	-2.1
	3천만 이하	816,381	-17,598	-14,366	-13.0
	4천만 이하	982,180	11,517	11,311	10.3
	4.5천만 이하	499,945	14,159	7,078	6.4
	5천만 이하	472,225	12,951	6,115	5.5
	6천만 이하	856,217	11,198	9,588	8.7
	8천만 이하	1,131,044	22,643	25,610	23.2
	1억 이하	477,632	71,751	34,270	31.1
	2억 이하	441,202	111,566	49,223	44.6
	3억 이하	27,200	172,735	4,698	4.3
	5억 이하	11,050	154,193	1,703	1.5
	10억 이하	3,929	137,785	541	0.5
	10억 초과	1,246	107,274	133	0.1
	결정세액 없는 자	소계	1,751,288	-66,895	- 23,327
1천만 이하		38,846	-18	-	0.0
1.5천만 이하		236,437	-3,606	-852	-0.8
2천만 이하		341,500	-19,757	-6,746	-6.1
3천만 이하		489,589	-22,866	-11,194	-10.2
4천만 이하		381,726	-10,977	-4,190	-3.8
4.5천만 이하		118,484	-2,283	-270	-0.2
5천만 이하		73,253	-687	-50	0.0
6천만 이하		55,777	-210	-11	0.0
8천만 이하		13,488	-776	-10	0.0
1억 이하		944	-5,259	-4	0.0
1억 초과	1,244	-457	-	0.0	

주: 1. 1인당 절세금액: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1인당 절세금액을 추정함

2. 세수감소=1인당 절세금액*보험료세액공제대상 총인원(『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17> 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5년)

(단위: 명, 원, 백만원, %)

총급여규모별		공제대상 총인원	1인당 절세금액	세수증가	비중
합계	전체	8,135,106	733,467	120,124	100.0
결정세액 있는 자	소계	6,347,158	810,753	148,769	123.8
	1천만 이하	-	-	-	0.0
	1.5천만 이하	7,317	-1,689	-12	0.0
	2천만 이하	208,871	-10,509	-2,195	-1.8
	3천만 이하	872,613	-18,047	-15,747	-13.1
	4천만 이하	1,038,597	10,827	11,245	9.4
	4.5천만 이하	523,079	13,854	7,246	6.0
	5천만 이하	494,309	13,082	6,466	5.4
	6천만 이하	874,875	11,514	10,073	8.4
	8천만 이하	1,233,526	23,037	28,416	23.7
	1억 이하	544,932	72,073	39,275	32.7
	2억 이하	499,651	112,205	56,063	46.7
	3억 이하	30,905	168,927	5,220	4.3
	5억 이하	12,909	151,719	1,958	1.6
	10억 이하	4,298	140,790	605	0.5
	10억 초과	1,276	122,969	156	0.1
결정세액 없는 자	소계	1,787,948	-77,286	-28,645	-23.8
	1천만 이하	36,839	-16	-	0.0
	1.5천만 이하	210,674	-2,915	-614	-0.5
	2천만 이하	371,878	-21,777	-8,098	-6.7
	3천만 이하	547,460	-27,434	-15,019	-12.5
	4천만 이하	373,411	-12,036	-4,494	-3.7
	4.5천만 이하	112,731	-2,693	-303	-0.3
	5천만 이하	70,159	-1,068	-74	-0.1
	6천만 이하	49,965	-424	-21	0.0
	8천만 이하	12,532	-1,251	-15	0.0
	1억 이하	994	-4,933	-4	0.0
	1억 초과	1,305	-2,738	-3	0.0

주: 1. 1인당 절세금액: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1인당 절세금액을 추정함

2. 세수감소=1인당 절세금액*보험료세액공제대상 총인원(『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제방식 변경이 고소득층뿐 아니라 총급여 3천만원 초과 서민층 및 중산층의 세부담을 높여 과도한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상기의 추정결과는 특별세액공제를 제외한 기타의 공제세액은 공제방식 변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소득세 공제방식 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므로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현실적이냐에 따라 분석결과의 타당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표 VI-18>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4년)

(단위: 명, 원, 백만원, %)

총급여규모별		공제대상 총인원	1인당 절세금액	세수증가	비중	
합계	전체	4,152,442	7,314,986	220,226	100.0	
	소계	3,932,385	7,329,098	220,662	100.2	
결정세액 있는 자	1천만 이하	-	-	-	0.0	
	1.5천만 이하	489	-22	-	0.0	
	2천만 이하	46,707	-751	-35	0.0	
	3천만 이하	255,410	-2,156	-550	-0.2	
	4천만 이하	486,369	1,508	733	0.3	
	4.5천만 이하	307,049	3,419	1,049	0.5	
	5천만 이하	328,675	4,101	1,348	0.6	
	6천만 이하	669,347	4,806	3,216	1.5	
	8천만 이하	975,811	21,922	21,391	9.7	
	1억 이하	427,558	119,221	50,973	23.1	
	2억 이하	397,286	266,931	106,047	48.2	
	3억 이하	23,005	717,306	16,501	7.5	
	5억 이하	9,739	1,031,129	10,042	4.6	
	10억 이하	3,696	1,438,050	5,315	2.4	
	10억 초과	1,244	3,723,634	4,632	2.1	
	결정세액 없는 자	소계	220,057	-14,111	-436	-0.2
		1천만 이하	3,010	-1	-	0.0
1.5천만 이하		8,542	-98	-	0.0	
2천만 이하		38,502	-1,420	-54	0.0	
3천만 이하		77,825	-4,017	-312	-0.1	
4천만 이하		45,642	-1,255	-57	0.0	
4.5천만 이하		15,022	-291	-4	0.0	
5천만 이하		12,507	-125	-1	0.0	
6천만 이하		12,713	-115	-1	0.0	
8천만 이하		4,532	-752	-3	0.0	
1억 이하		685	-5,095	-3	0.0	
1억 초과		1,077	-941	-1	0.0	

주: 1. 1인당 절세금액: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1인당 절세금액을 추정함

2. 세수감소=1인당 절세금액*기부금세액공제대상 총인원(『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19>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세수에 미친 영향(2015년)

(단위: 명, 원, 백만원, %)

총급여규모별		공제대상 총인원(명)	1인당 절세금액(원)	세수증가 (천원)	비율
합계	전체	4,412,624	8,629,754	258,827	100.0
	소계	4,134,478	8,668,716	259,581	100.3
결정세액 있는 자	1천만 이하	-	-	-	0.0
	1.5천만 이하	478	-40	-	0.0
	2천만 이하	43,498	-807	-35	0.0
	3천만 이하	265,121	-2,366	-627	-0.2
	4천만 이하	488,110	1,332	650	0.3
	4.5천만 이하	310,644	3,333	1,035	0.4
	5천만 이하	333,769	4,073	1,359	0.5
	6천만 이하	663,305	4,787	3,175	1.2
	8천만 이하	1,051,157	22,877	24,046	9.3
	1억 이하	485,844	123,380	59,943	23.2
	2억 이하	449,835	276,193	124,241	48.0
	3억 이하	25,952	780,201	20,247	7.8
	5억 이하	11,443	1,119,742	12,813	5.0
	10억 이하	4,027	1,657,927	6,676	2.6
	10억 초과	1,295	4,678,085	6,058	2.3
		소계	278,146	-38,962	-754
결정세액 없는 자	1천만 이하	3,454	-1	-	0.0
	1.5천만 이하	8,459	-86	-	0.0
	2천만 이하	42,352	-1,517	-64	0.0
	3천만 이하	104,128	-5,145	-535	-0.2
	4천만 이하	60,079	-1,791	-107	0.0
	4.5천만 이하	19,759	-439	-8	0.0
	5천만 이하	16,275	-248	-4	0.0
	6천만 이하	16,068	-304	-4	0.0
	8천만 이하	5,690	-769	-4	0.0
	1억 이하	763	-7,790	-5	0.0
	1억 초과	1,119	-20,873	-23	0.0

주: 1. 1인당 절세금액: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1인당 절세금액을 추정함

2. 세수감소=1인당 절세금액*기부금세액공제대상 총인원(『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 및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소결

-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공제방식 변경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1만원의 세부담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2015년 기준)

- 총급여 1천만~3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공제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1인당 3.6만~4.8만원 감소한 반면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부담이 1인당 2만~500만원 증가함
-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공제방식 변경 전 4.90%에서 공제방식 변경 후에는 4.63%로 낮아져(2015년 기준) 공제방식 변경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급여총계 하위 10~30% 사이 구간에서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효과가 일부 관찰됨
- 2015년 기준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은 0.82%, 개인기부금 비율은 62%로 기부금 관련 조세지출의 정책목표 달성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
 -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의 정책적 목표는 개인기부금 비율 70%,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 2.0%를 달성하는 것임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된 결과, 공제방식 변경 후 조세지원이 가구의 기부금지출 증가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공제방식 변경이 고소득 근로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부수준에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 공제방식 변경이 국가재정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보장성보험료 공제방식 변경으로 2014년 1,102억원, 2015년 1,201억원,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으로 2014년 2,202억원, 2015년 2,588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총급여 3천만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 구간에서 걷어들인 세수는 감소했으나, 총급여 3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과도한 세수증가가 발생함
- 전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Ⅶ.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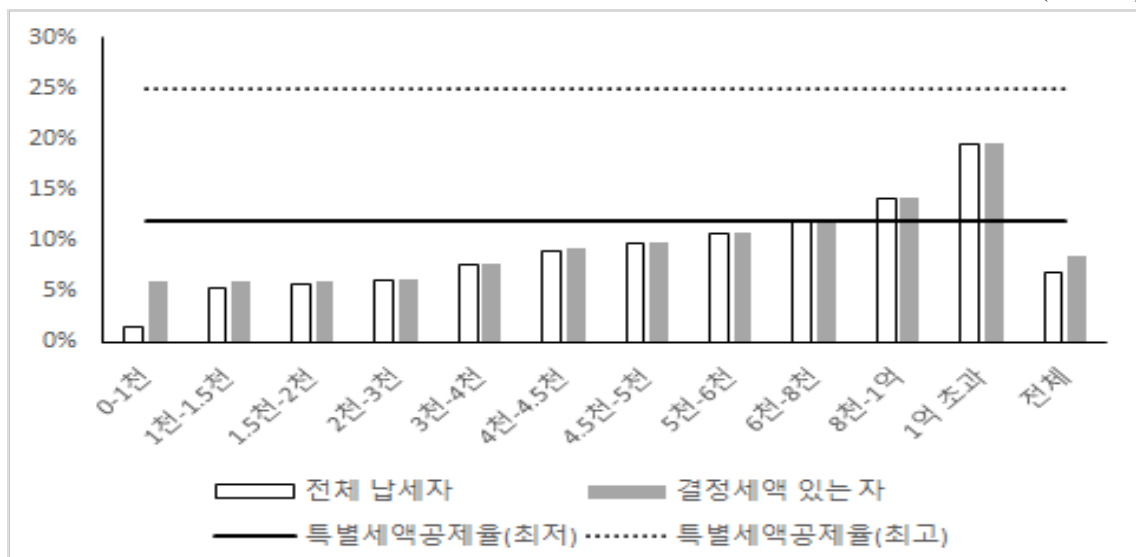
VII. 개선방안

1. 특별세액공제율 인하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초래한 문제점 중 하나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제방식 변경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2014년 18.4%p, 2015년 19.6%p가 증가함
-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과세기반을 침식함
 - 현재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상당히 높으나, 최근 임금상승 등의 원인으로 그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30%대로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VII-1] 소득공제 방식하에서의 유효세율과 특별세액공제율 비교

(단위: %)



주: 1. 4개의 특별공제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재계산할 경우 소득세 유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

2.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결정세액이 없는 자 모두 포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후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이유는 특별세액공제율이 소득공제하의 유효세율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기 때문임
 - 소득공제하에서 총급여 6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유효세율 약 11%이나, 특별세액공제율은 이보다 높은 12%, 15% 수준에서 설정됨

- <표 VII-1>은 보험료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인하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해서는 기부금보다 보험료 세액공제율 인하가 보다 효과적임
 - 저소득층은 기부여력이 낮아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것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 반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거의 전 소득구간에 걸쳐 공제대상금액이 공제한도인 100만원에 근접하고 있어 세액공제율 인하가 면세비율 축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민간보험 가입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공적 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을 통한 사적 사회안전망 제공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세액공제율의 점진적 인하를 통해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약해 민간의 보장성보험 가입에 대해 조세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나, 공적 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 가입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음

- 한편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로 낮추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0%대로 축소되나,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0%일 때와 8%, 6%일 때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7.11%로 동일함

<표 VII-1> 특별세액공제율 인하여 따른 소득세 면세자 비율

(단위: %)

구분	보험료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	소득세 면세자 비율
현재 규정	12	15(고액기부금 30)	47.48
방안 A	10	15(고액기부금 25)	37.27
방안 B	12	12(고액기부금 25)	43.01
방안 C	10	12(고액기부금 25)	37.11
방안 D	10	10(고액기부금 15)	37.11
방안 E	8	8(고액기부금 12)	37.11
방안 F	6	6(고액기부금 10)	37.11

□ <표 VII-2>는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로 낮추었을 때 급여구간별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살펴본 결과로 총급여 1천만~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고르게 10%p 이상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총급여 1천만~1천 5백만 구간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76.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VII-2> 보험료 세액공제율 인하여 따른 급여구간별 소득세 면세자 비율 비교

(단위: 명, %)

총급여 규모별	표본 수	현행 방식 하에서의 소득세 면세자 수(비중)		방안 A 선택 시의 소득세 면세자 수(비중) ¹⁾		세제개편 효과
		수	비중	수	비중	
0~1천만	220,494	220,494	100.0	218,281	99.0	1.0
1천만~1.5천만	128,990	111,419	86.4	98,631	76.5	9.9
1.5천만~2천만	117,258	48,044	41.0	25,791	22.0	19.0
2천만~3천만	172,582	59,451	34.4	27,251	15.8	18.7
3천만~4천만	112,756	33,903	30.1	12,230	10.8	19.2
4천만~4.5천만	43,032	8,338	19.4	1,758	4.1	15.3
4.5천만~5천만	36,252	4,635	12.8	536	1.5	11.3
5천만~6천만	57,468	2,977	5.2	146	0.3	4.9
6천만~8천만	75,667	760	1.0	37	0.0	1.0
8천만~1억	33,160	52	0.2	4	0.0	0.1
1억 초과	34,578	72	0.2	8	0.0	0.2
전체	1,032,237	490,145	47.5	384,673	37.3	10.2

주: 1)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로 낮출 경우 소득세 납세자 수(비중)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총급여 1천 5백만 이하 구간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별세액 공제율 인하보다 표준세액공제금액 인하가 효과적일 수 있음
 - 총급여 1천 5백만 이하 근로자는 공제항목 지출이 많지 않아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
 - 현재의 표준세액공제금액 13만원에 종전의 표준공제 100만원에 13% 유효세율을 가정하여 계산된 것으로 소득공제하의 유효세율 평균이 8%임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중산층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0%로 낮출 경우 근로자 1인당 평균 8,448원의 세부담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VII-3> 보험료세액공제율 인하에 따른 1인당 세부담 증가

(단위: 원)

총급여 규모별	1인당 세부담 증가
0~1천만	36
1천만~1.5천만	1,063
1천만~2천만	4,971
2천만~3천만	8,820
3천만~4천만	13,172
4천만~4.5천만	16,108
4.5천만~5천만	17,155
5천만~6천만	17,886
6천만~8천만	18,480
8천만~1억	18,623
1억 초과	18,117
전체	8,448

주: 1.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로 낮출 경우 1인당 세부담 증가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 설정

- 종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공제 혜택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합계가 2,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특별세액공제에는 통합한도 규정이 없음
- 기존에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고소득 근로자 중 일부가 공제방식 변경 후 한도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됨으로써 세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함

〈표 VII-4〉 소득공제 종합한도 규정(2013년 적용)

구 분			한도대상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지정기부금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공 제	건강(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일반 보장성 보험료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공 제	일반 의료비	○	
			장애인 의료비	×	
		교육비 공 제	일반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주택자금 공제		○	
		소득공제	기부금 공 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소득공제		×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소득자가 과도한 공제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방식 변경 후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음
 - 공제방식을 바꾼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대신 과도한 세금공제혜택을 받고 있던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이러한 도입취지를 고려했을 때 공제방식 변경 후 통합한도의 폐지로 일부 고소득층에 세제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통합한도 적용대상을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으로 설정하면 전체 근로자의 1.32%, 기부금을 제외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항목에 대해서만 통합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0.72%가 한도(200만원) 초과로 특별세액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추정됨
 - 통합한도 200만원은 종전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에 소득공제 하에서의 평균 유효세율 8%를 곱해 산출된 값임
 - 4개의 특별공제항목 모두에 대해 200만원의 통합한도를 적용할 경우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15%가 통합한도 적용으로 특별세액공제가 제한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기부금을 통합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고액기부 유인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납세자 형태(법인, 개인)에 따라 기부금 지출에 차등적 혜택이 부여되어 세부담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법인의 기부금 지출은 소득기준 한도는 있지만, 통합한도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만 통합한도를 둘 경우 납세자 유형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표 VII-5>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 초과인원 추정

(단위: %)

총급여 규모별	(가)근로소득자 ¹⁾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에 대해 통합한도 적용		의료비·교육비·보험료에 대해 통합한도 적용	
		(나)한도 초과자 비율 ²⁾	(다)한도 초과자 ³⁾ (다=가×나)	(라)한도 초과자 비율 ²⁾	(마)한도 초과자 ³⁾ (마=가×라)
1천만 이하	3,610,221	0.00	-	0.00	-
1.5천만 이하	2,084,938	0.00	-	0.00	-
2천만 이하	1,961,900	0.00	-	0.00	-
3천만 이하	2,930,090	0.00	-	0.00	-
4천만 이하	1,928,195	0.00	-	0.00	-
4.5천만 이하	737,622	0.04	274	0.03	223
5천만 이하	622,341	0.27	1,700	0.20	1,253
6천만 이하	988,334	1.36	13,483	0.93	9,218
8천만 이하	1,303,229	5.66	73,819	3.54	46,072
1억 이하	570,400	8.66	49,403	4.72	26,920
1억 초과	596,124	14.99	89,338	6.81	40,600
전체	17,333,394	1.32	228,016	0.72	124,287

주: 1)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수
 2)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샘플링자료를 이용해 추정한 한도초과자 비율
 3) 특별세액공제 통합한도를 2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도초과자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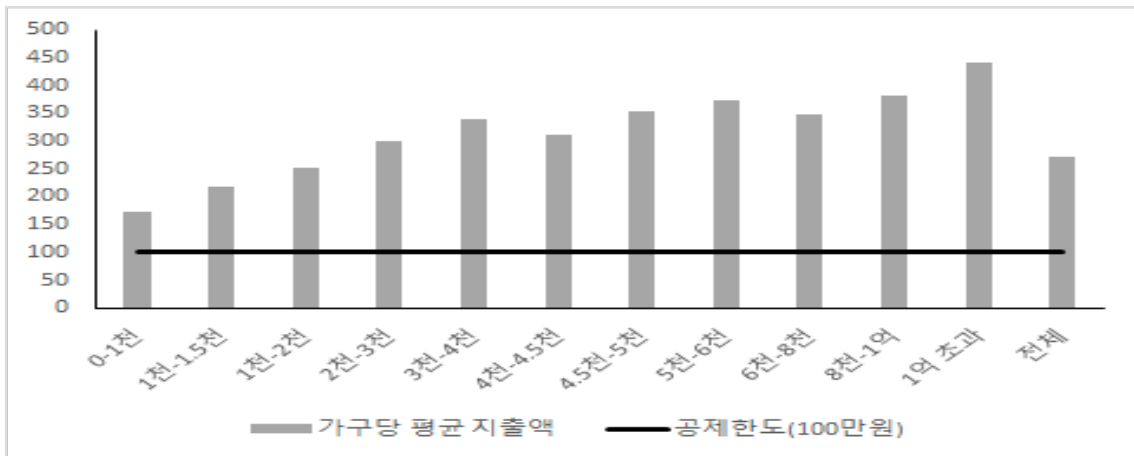
3.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조정

가. 고소득층의 공제한도 축소

- 현재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인 100만원은 최저소득 가구(총급여 1천만원 이하)의 보장성보험료 지출액 173.7만원의 57.6%에 불과함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전 소득구간에서 가구당 보장성보험료 지출액이 공제한도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I-2] 총급여 규모별 가구당 보장성보험료 지출액(2015)

(단위: 만원)



주: 1.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기준

2. 가구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현 상태에서 보험료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지출만 초래할 뿐 보장성보험의 추가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늘리려면 공제한도보다 실제 지출액이 적어야 함
 - 현재는 실제 지출액이 공제한도보다 높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인상할 경우 신규가입이나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저소득층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적보험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할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고소득층은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낮음
 - 공적보험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지만, 민간보험 가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움
 -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 가입을 통한 사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조세지원을 통해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할 정책적 당위성이 낮아짐

- 저소득층은 현재의 공제한도를 유지하되, 고소득층은 점진적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고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료 공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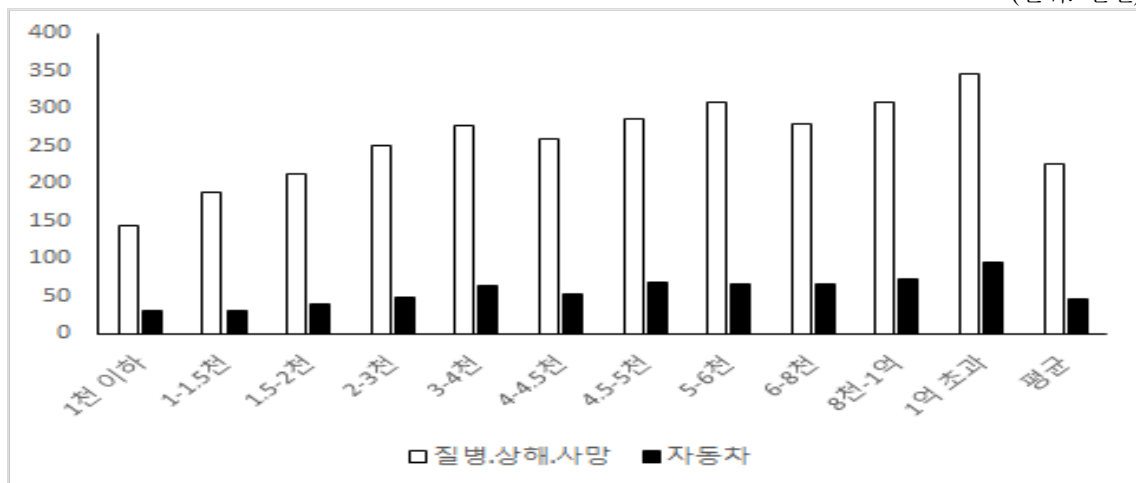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질병·상해·사망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은 법률에 따른 가입의무가 있지만, 질병·상해·사망보험은 가입 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음

- 현재 보험료세액공제제도는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보험과 그 외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고 있는지 않음
 - 장애인전용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100만원의 추가공제한도를 인정하고, 더 높은 세액공제율(15%)을 적용하는 등 우대조치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지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낮음
 - 반면 질병·상해·사망보험은 가입 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조세지원이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자동차보험료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더라도 고가자동차 구입으로 증가한 자동차보험료의 세액공제는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I-3] 총급여규모별 가구당 자동차보험료와 질병·상해·사망보험료(2015)

(단위: 만원)



주: 1.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 기준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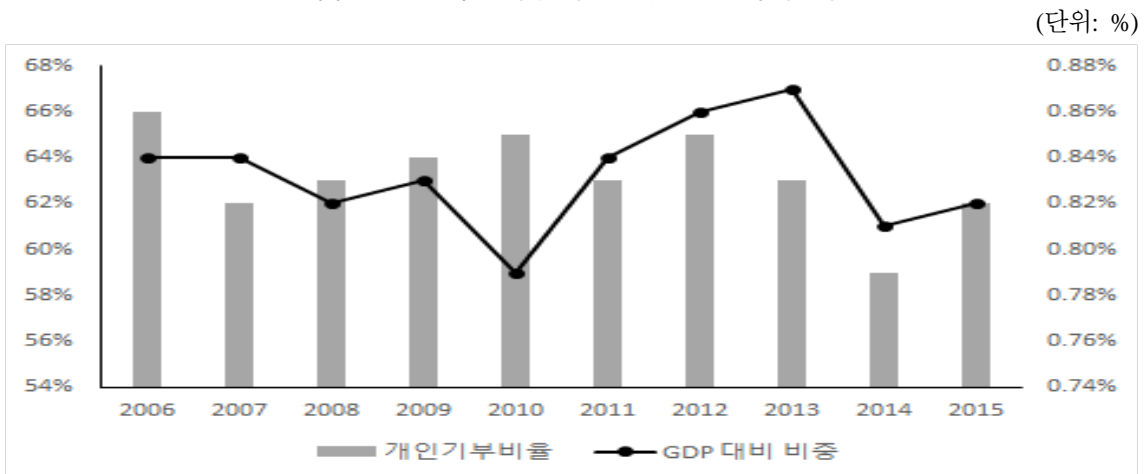
- 일반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을 자동차보험료 한도와 질병·상해·사망보험료 한도로 구분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료 공제한도는 최저소득 가구의 자동차보험료 3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의무가입대상인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4.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

가.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비조세수단의 비중 확대

- 그동안 기부금 공제제도의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고액자산가의 기부를 유인하기 위해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지만, 기부금 공제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는 낮은 편임
 - GDP 대비 기부금지출액, 개인기부비율이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에 있음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근로소득자 가구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후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증가에 조세지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II-4] 개인기부비율 및 GDP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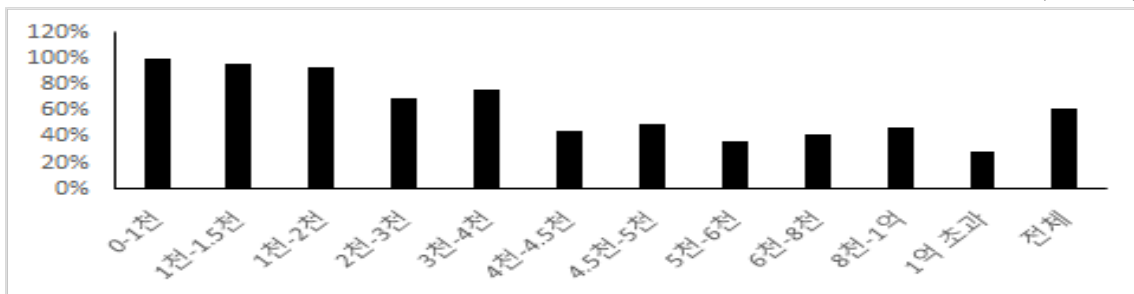
주: 1. 개인기부비율=개인기부금/기부금총액
 2. GDP 대비 비중=기부금총액/명목 GDP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공제방식 변경으로 기부금의 절세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이 그 이유로 추정됨
 - 그러나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기부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음
- 고액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개인기부 규모가 늘고 있지 않아 세제지원보다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비조세적 수단을 통한 개인기부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기부단체 선택의 제일 중요한 고려요소로 ‘기부 금액의 투명한 운영’을 꼽음
- 특히, 기부금 공제대상자의 70% 이상이 총급여 4천 5백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며,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이 전체 기부금 공제세액의 약 88%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은 기부금 공제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급여가 낮을수록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면세자 비율 때문으로 추정됨
 -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자는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높은 면세자 비율로 인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기부유인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VII-5]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미공제액 비중(2015)

(단위: %)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2. 가구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3. 기부금 한도초과액/기부금 지출액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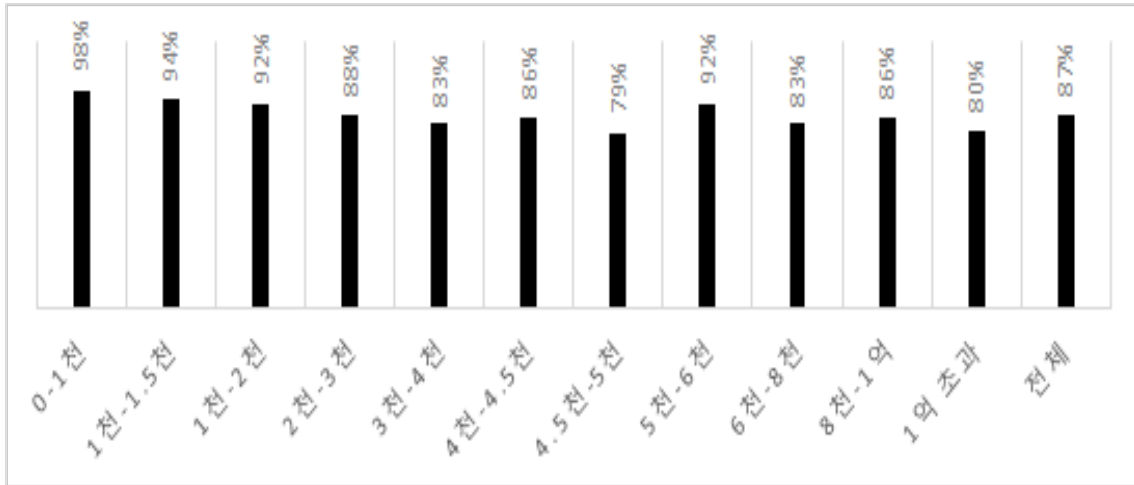
-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면세자에 해당하는 현재 상황에서 개인 기부 저변 확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조세 정책수단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등 비조세 정책수단을 통한 접근방법이 개인기부 문화 확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조세지원은 고소득자의 기부장려 수단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공제방식 변경으로 고소득자의 기부금 혜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의 기부행태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기부에는 조세지원 이외에도 이타적 동기 등 다양한 기부동기가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한 연장

- 종교단체기부금이 전체 기부금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종교단체기부금 비중이 높음
 - 총급여 5천만~6천만원인 가구의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이 92%에 달해 종교단체 기부금 쏠림현상이 심함
- 조세지원이 저소득층의 기부 유인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대해 이월공제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은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함
 - 저소득층에서 미공제기부금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한도가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됨
 - 향후 공제 가능한 세금이 발생했을 때 기부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공익적 기부금 지출에 대해 공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VII-6] 가구당 기부금 지출액 중 종교단체 기부금 비중(2015)

(단위: %)



- 주: 1. 2015년에 기부 실적이 있는 홑벌이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평균 기부금 지출액
- 2. 가구주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구분
- 3.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기타 공익적 기부금)

자료: 재정패널 9차 자료(2015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 강철희, 「후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 특징과 그들의 후원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998, pp. 1~30.
- 고경환, 『나눔실태 및 인식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구지윤, 「기부행동의 성별 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7, 2013, pp. 93~12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문진주·홍기용,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7 (1): 2016, pp. 199~220.
-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2010, pp. 143~158.
- 박수범, 「한국에서의 개인기부에 대한 요인분석: 설문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5 (1): 2006, pp. 137~162.
- 박명호·전병목,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박태규·윤병호·정진욱,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 (3): 2008, pp. 79~100.
- 성명재·우석진,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3. 10.
- 손원익·김정아·송은주,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1.
- 손원익·박태규,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6 (4): 2013, pp. 151~178.
- 유경문·이선성·박기백, 『기부금 세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0. 8.
- 이상신·박훈,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9.
- 이상신,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11.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2015. 12.

이용규·송용찬, 『국내·외 기부문화 고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2. 22.

황창순·강철희,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
(2): 2002, pp. 33~73.

National Audit Office, 『Tax relief』, 2014.

프랑스 정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7』, 2016.

프랑스 정부,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Dépenses Fiscales』, 2017.

<http://uscode.house.gov/download/download.shtml>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0>

<https://www.gov.uk/charities-and-tax/tax-reliefs>

<http://www.e-gov.go.jp/index.html>

<https://www.economie.gouv.fr>

